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3호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읍면동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 제6항”을 “제4조의2 제2항, 제5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중에서”를“주민(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 자도 임명 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제3항 중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를 “해임·자진사퇴”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

제12조제2항 중 “통·아·반장”을 “통·이장”으로 한다.

제16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통·이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읍·면·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제4조의2 제2항, 제5항----- ----- -----.</p>
<p>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통·이장은 관할구역 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중에서 통(리)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애향심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봉사정신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25세이상 70세이하인 자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해 읍·면·동장이 임명한다. < 단서신설 ></p> <p>② (생 략)</p>	<p>제4조(통·이장의 임명) ①----- -----주민(신설된 통·리의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중에서----- ----- ----- ----- ----- ----- 단, 부득이한 경우 70세를 초과한자도 임명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통·이장의 임기) ①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의한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읍면동장이 현 통·이장에 대하여 재위촉 하고자 할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③통·이장중 임기중에 해임·자진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는 1년 이내 재 임명 할 수 없다. 다만 임기만료로 퇴직한 자중 제7조제1항의 단서에 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p> <p>④ (생 략)</p>	<p>제7조(통·이장의 임기) ① 통·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4조의 절차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해임·자진사퇴 ----- ----- < 단서삭제 ></p> <p>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비밀유지) ① (생략)</p> <p>② <u>통·이·반장은</u>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12조(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통·이장은</u> ----- ----- -----.</p>
<p>제16조(통·이장의 교체) 통·이장의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p> <p>1. ~ 7. (생략)</p>	<p>제16조(통·이장의 교체)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7. (생략)</p>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4호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을 각각“「지방자치법」 제1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조례의 제정및 개폐청구 시 필요한 연서주민수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 ----- -----.</p>
<p>제2조(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 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의 주민이 군산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연서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는 이를 1로 본다.</p>	<p>제2조(연서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5조 ----- ----- ----- ----- ----- ----- -----.</p>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5호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체육진흥”을 “체육진흥, 근대문화시설 사업”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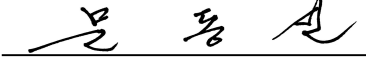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	관의 설치) 시장 밑에 공보담당관, 부시장	제4조(실·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 보좌기	관의 설치) -----	----- 정보통신담당관, 새만금지
밑에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을 둔다.				원담당관 을 둔다.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생략)	②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7조(주민생활지원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은)	② -----.
1. ~ 3.(생략)	4. 지방문화, 예술, 체육진흥에 관한 업무	1. ~ 3.(현행과 같은)	4. 지방문화, 예술, 체육진흥, 근대문화시설	사업 에 관한 업무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30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u>1,041</u>	-				
3급	1	1				
4급	8	4	1	1	2	
5급	72	32	3	3	7	27
6급 이하 계	<u>960</u>	-				
별정직 계	31	-				
6급 상당 이하 계	31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u>2</u>	<u>1</u>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u>222</u>	-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총계	1,330	-					총계	1,330	-				
정무직계	1	-					정무직계	1	-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u>1,040</u>	-					일반직 계	<u>1,041</u>	-				
3급	1	1					3급	1	1				
4급	8	4	1	1	2		4급	8	4	1	1	2	
5급	72	32	3	3	7	27	5급	72	32	3	3	7	27
6급 이하 계	<u>959</u>	-					6급 이하 계	<u>960</u>	-				
별정직 계	31	-					별정직 계	31	-				
6급 상당 이하계	31	-					6급 상당 이하계	31	-				
연구직 계	3	-					연구직 계	3	-				
연구사	3			<u>1</u>	<u>2</u>		연구사	3			<u>2</u>	<u>1</u>	
지도직 계	32	-					지도직 계	32	-				
지도관	3			3			지도관	3			3		
지도사	29			29			지도사	29			29		
기능직계	<u>223</u>	-					기능직계	<u>222</u>	-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7호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의 각종 법률자문 및 쟁송사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군산시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시 또는 시장에 대한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 기관에 대한 법적인 사항
4.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국제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할 수 없으며, 시 또는 시장이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 등) ① 시장은 3개 이내의 법무법인(법무공단을 포함한다)과 6명 이내의 개업 중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송사건 진행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변호사 위촉은 별지 제2호서식 승낙서 제출과 별지 제3호서식 위촉장 수여로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3. 법률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4.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고문수당 등)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 분기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6조(자문실적대장 비치)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실적대장을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위촉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3호서식]

위 축 장

주소 :

성명 :

귀하를 「군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제3조에 따라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군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군 산 시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m²]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통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8호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중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을 “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송달은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다.

-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교부·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을 말한다.

제2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

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로 한다.
제27조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천분의 4)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40조의4제1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제4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제3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하며, “관세법 제17조 내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세납세신고서 또는 부과고지서 사본”을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4조와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1에”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8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3조, 제69조제2항과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7조(수정신고)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생략)</p> <p>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신 설></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 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 받도록 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법 제5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이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을 말한다.</p> <p>② (현행 제1항과 같음)</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영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우편송달은 납세고지서·납입통지서·독촉장 및 최고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 ----- -----.</p>

연 행	개 정 안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생략)</p> <p><신 설></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 ① (생략)</p> <p>②세무서장이 <u>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u>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p> <p>③ (생략)</p> <p>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u>그 다음달 말일까지</u>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 6.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u>법인세할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주민세 산출세액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77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u></p> <p>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 고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u>-----</p> <p>-----.</p> <p>③ (현행과 같음)</p> <p>④-----</p> <p>-----</p> <p>----- <u>그 다음 달 15일까지</u> -----</p> <p>-----</p> <p>-----.</p> <p>제24조(납세의무자)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연 행	개 정 안																												
<p>제27조(세율)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3. (생략) 가. (생략) 나. <u>가목이외의 주택</u></p> <table border="0"> <tr> <td style="padding-right: 20px;">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4,000만원이하</td> <td>1,000분의 1.5</td> </tr> <tr> <td>4,000만원초과 1억</td> <td>6만원+4,000만원초과</td> </tr> <tr> <td>이하</td> <td>금액의 1,000분의 3</td> </tr> <tr> <td>1억원초과</td> <td>24만원+1억원초과금액</td> </tr> <tr> <td></td> <td>의 1,000분의 5</td> </tr> </table> <p>4. ~ 5. (생략)</p>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	6만원+4,000만원초과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		의 1,000분의 5	<p>제27조(세율) ----- -----.</p> <p>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u>가목이외의 주택</u></p> <table border="0"> <tr> <td style="padding-right: 20px;"><과세표준></td> <td><세율></td> </tr> <tr> <td>6천만원 이하</td> <td>1천분의 1</td> </tr> <tr> <td>6천만원 초과</td> <td>6만원+(6천만원 초과</td> </tr> <tr> <td>1억5천만원 이하</td> <td>금액의 1천분의 1.5)</td> </tr> <tr> <td>1억5천만원 초과</td> <td>19만5천원+(1억5천만원</td> </tr> <tr> <td>3억원 이하</td> <td>초과금액의 1천분의 2.5)</td> </tr> <tr> <td>3억원 초과</td> <td>57만원+(3억원 초과금액</td> </tr> <tr> <td></td> <td>의 1천분의 4)</td> </tr> </table> <p>4. ~ 5. (현행과 같음)</p>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6만원+(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		의 1천분의 4)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초과 1억	6만원+4,000만원초과																												
이하	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초과	24만원+1억원초과금액																												
	의 1,000분의 5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천분의 1																												
6천만원 초과	6만원+(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금액의 1천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19만5천원+(1억5천만원																												
3억원 이하	초과금액의 1천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																												
	의 1천분의 4)																												
<p>제30조(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p> <p>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u> 2. <u>보관, 가공, 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부동산</u> 3. <u>생산 및 검사사업용 부동산</u> 4. <u>농어민 교육시설용 부동산</u>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75 로 한다.</p>	<p><삭 제></p>																												
<p>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p>제32조(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한 때 																												

변 행	개 정 안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 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 년월일, 기관 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 ----- ----- ----- ----- ----- ----- -----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제69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p> <p>1. ~ 5. (생략)</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1. ~ 4. (생략)</p> <p>③ (생략)</p>	<p>제69조(가산세) 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②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 (생략)</p>	<p>제93조(신고의무) ①----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p> <p>-----</p> <p>-----</p> <p>-----</p> <p>-----</p> <p>1. ~ 6.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9조(신고의무) ①(생략)</p> <p>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7. (생략)</p>	<p>제99조(신고의무) ①(현행과 같음)</p> <p>②---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p> <p>-----</p> <p>1. ~ 7.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09호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군산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는 “국가유공

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까지의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6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7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과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전라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1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

제4장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12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따라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1.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2.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와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제14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에 따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16조(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서 자동차의 가장 앞부분과 조향운전대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전방조종자동차 중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다.

제17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

지와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 부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제1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사용승인서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9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23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2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 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옥구농공단지
2. 서수농공단지
3. 성산농공단지

제25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가 그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법인이 해산한 때(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기 전에 생산하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본사를 다시 설치한 때에는 감면한 세액을 추징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3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본사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3을 준용하고,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제26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7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28조(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 후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 감면기간동안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보칙

제29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를 준용한다.

제3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를 적용한다.

제3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0호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증명등수수료 (인가, 허가, 신고, 건축 등록지정확인등) 8. 해양수산관계의 ①란부터 ⑳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㉑란 다음에 ㉒란과 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① 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③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허가 신청	1건	4,500원	
④ 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허가신청	1건	4,000원	
⑤ 관리선사용의지정(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3,000원	
⑥ 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800원	
⑦ 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 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3,500원	
⑧ 수산업가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⑨ 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 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500원	
⑪ 유해어업의 사용허가신청	1건	3,500원	
⑫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1,200원	
⑬ 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 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건당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1,5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록교부 신청	1건	1,5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1,5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⑯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	1건	1,600원	
⑰ 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변경신고	1건	1,600원	
⑱ 어업신고	1건	1,600원	
⑲ 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⑳ 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㉑ 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㉒ 수산동식물의 포획·채포금지 해제 허가 신청	1건	1,500원	
㉓ 어업권 지분의 이전·변경등의 등록	1건	1,500원	
㉔ 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㉕ 어업허가증(신고필증)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㉖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어선사용승인)증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구 분	기준	요액	비고
㉘ 낚시어선업 신고	1건	6,000원	
㉙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 사항 변경 신청	1건	3,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원)	비 고	구분	기준	요액(원)	비 고
(인가, 허가, 신고, 건축 등록지 정확인등)				(인가, 허가, 신고, 건축 등록지정확인등)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해양수산관계				8. 해양수산관계			
①수산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신청	1건	4,500원		①외국인에 대한 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②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	1건	4,500원		②어업면허신청	1건	4,500원	
③법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4,500원		③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	1건	4,500원	
④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4,000원		④어업권의 이전분할변경 허가 신청	1건	4,000원	
⑤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 및 승인신청	1건	3,000원		⑤관리선사용의지정 (어선사용승인)신청	1건	3,000원	
⑥법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4,800원		⑥근해어업허가신청	1건	4,800원	
⑦법제41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3,500원		⑦연안구획·육상해수양식·종묘생산어업허가 신청	1건	3,500원	
⑧법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1건	3,200원		⑧수산업기공업등록 신청	1건	3,200원	
⑨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	1건	2,000원		⑨유어장 지정신청	1건	2,000원	
⑩법제58조 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	1건	3,500원		⑩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	1건	3,500원	
⑪법제7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1건	3,500원		⑪유해어업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500원	
⑫법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	1건	1,200원		⑫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신청	1건	1,200원	
⑬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재결신청	1건	3,200원		⑬입어 재결신청	1건	3,200원	
⑭어업등록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어업권 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⑭어업권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및 초본 교부신청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1,500원		(가) 어업권 원부의 열람신청	1건	1,5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구분	기준	요액(원)	비고	구분	기준	요액(원)	비고
(나) 어업권 원부의 등본교부 신청	1건	1,500원		(나) 어업권 원부의 등본교부 신청	1건	1,5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1,500원		(다) 어장도를 제외한 어업권 원부의 초본 교부신청	1건	1,5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라) 어장도의 교부신청	1건	800원	
⑮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11조	1건	1,600원		⑮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600원	
⑯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18조	1건	1,600원		⑯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1건	1,600원	
⑰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21조	1건	1,600원		⑰어업허가사항(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600원	
⑱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32조	1건	1,600원		⑱어업신고	1건	1,600원	
⑲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 규칙제4조	1건	1,000원		⑲어업면허 우선순위결정 신청	1건	1,000원	
⑳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 규칙 제4조제4항	1건	1,000원		㉑어업면허신청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㉑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 규칙 제29조 제2항	1건	1,000원		㉑어업 재개(개시)신고	1건	1,000원	
㉒수산자원보호령 제15조 제1항	1건	1,500원		㉒수산동식물의 포획 채포금지 해제허가 신청	1건	1,500원	
㉓어업등록령 제28조 제1항	1건	1,500원		㉓어업권 지분의 이전 변경 등의 등록	1건	1,500원	
㉔수산가공업허가등에관한 규칙 제4조	1건	1,000원		㉔수산물가공업 신고	1건	1,000원	
㉕어업허가및신고등에관한 규칙 제20조 제2항	1건	1,500원		㉕어업허가증(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1,500원	
㉖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 관한규칙 제26조 제9항	1건	1,000원		㉖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 (어선사용승인)증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㉗(생략)				㉗(현행과 같음)			
㉘<신설>	-	-		㉘낚시어선업 신고	1건	6,000원	
㉙<신설>	-	-		㉙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 승인)사항 변경 신청	1건	3,000원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1호

군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

군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통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2호

군산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중 “제조업 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을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은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200인 이상”으로 한다.

제2조 제18호부터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건당”을 말한다.
-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 2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8조제1항중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을 “30인 이상” 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투자금액으로 20억원”으로, “기업당”을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으로 한다.

제18조의2중 “시내에서”를 “도내에서”로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을 “30인 이상”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중 “기업당”을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 건당)”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

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3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20조 및 제23조에 해당 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2조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제24조(보조금의 이중지급 금지)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 14 (생략)	제2조(정의) 1 ~ 14 (생략)
15. “대규모투자기업”이라 함은 제조업 중 투자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500인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15.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상, 관광사업인 경우 20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신 설>	18. “이전 건당”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이전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18조에 의한 “이전 건당”을 말한다.
<신 설>	19.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20.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제 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내·외국인을 말한다.
<신 설>	21. “관광사업의 종류란”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종류 중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국제회의 시설업, 제 2종 종합휴양업 (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 시설업 및 연수원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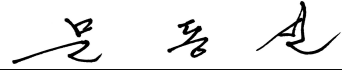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공장시설보조금 지원)</p> <p>①시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업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50여 원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50여 원을 초과하는 시설금액의 2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제16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p> <p>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시내에서 첨단업종 및 관광사업에 신설·이전·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조례 제 18조, 제 18조의2,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 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p>
<p>제1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다음과 같은 기업이 군산시로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여 상시고용 인원이 20인 이상 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1. ~ 2. (생 략)</p>	<p>제18조(국내기업의 이전비 지원) ① ----- ----- ----- 30인 ----- -----.</p> <p>1. ~ 2.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생 략)</p> <p>③ 공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에 따른 보조금은 토지구입 (임대료포함) 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제18조의 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 시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업종이 시내 미분양 부지에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18조제 3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9조 ① (생 략)</p> <p>② 시장은 전라북도 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20억원을 -----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건당)----- ----- -----</p> <p>제18조의 2 (기존기업의 시내공장 설립시 시설 투자비 지원) 도내 ----- ----- ----- 상시고용인원 30인 ----- ----- -----</p> <p>제19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기업당 (단 수도권 기업의 경우 이전건당)----- ----- -----</p> <p>제20조(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시장은 관광사업자가 제2조 제21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30인</p>

현행	개정안
	<p>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 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p>
<p><신설></p>	<p>제2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 18조의 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2조(관광사업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시장은 20조 및 제2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의 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p>
<p><신설></p>	<p>제2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시장은 제 2조 21호에 따른 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 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투자금액은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 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p>
<p><신설></p>	<p>제24조 (보조금 이중 지급금지) 제 20조 및 제 23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p>
<p>제20조 ~ 제33조 (내용생략)</p>	<p>제25조 ~ 제38조 (내용은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3호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시 농업·농촌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자”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3. “귀촌자”란 타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한 자 로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를 말 한다.
4. “지원”이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산시장 (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용역과 재화 및 영농기술등을 말한다.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5호에 따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타 지역”이란 군산시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도시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8.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가목의 규정을 말한다.

제2장 귀농·귀촌자 지원 체계

- 제3조(귀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귀농·귀촌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군산시귀농·귀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향만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향만경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2. 위촉직 위원
 - 가.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 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 단체 대표자 5명 이내
 - 다. 농업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이내
 - 라. 기타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자 3명 이내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귀농·귀촌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2. 귀농·귀촌자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
3. 귀농·귀촌자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
4.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제6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금을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1. 교육 훈련 지원
2. 농업 창업 자금 지원
3. 농지 구입 자금 지원
4. 주거 지원
5. 기타 농업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제7조(멘토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농촌 지역 사회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덕망있는 주민이 후견인이 되도록 하고 행정적인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다.

제8조(농기계 임대 지원) ① 시장은 귀농·귀촌자가 영농에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임대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귀농·귀촌자의 농기계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9조(귀농·귀촌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귀촌자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귀촌자가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지역 또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귀농자가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보조 목적 외의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시장이 귀농·귀촌자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귀촌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귀농·촌 전			전화번호 및 전자 메 일	TEL :	
		귀농·촌 후				H.P :	
	학 력		귀농·촌 전 직업		(근무처 :)		
	영농경력		년	교육 실적		분야(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m ²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m ² - 농 기 계 :					
사업신청 내 용	사업별	사업량	사업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농업창업자금						
	농지구입자금						
	주택신축비						
	주택구입비						
주택수리비							
본인은 귀농·귀촌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귀농·귀촌 창업계획서(별지2호서식)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기타증빙자료(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진등 해당 사업에 한함)							

(별지 제2호 서식)

귀농·귀촌 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및 농기계

구분	영농규모(m ²)				농기계 보유(대/연식)			
	계	논	밭	과수원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소 유					/	/	/	/
임 차					건조기	선별기	차량	기타
계					/	/	/	/

② 시설현황(동/m²)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재배현황(m²) 및 가축사육두수(마리)

계	벼	보 리			한우	젖소		

④ 기타 특기사항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융자	자담
계							
농 지 구 입							
하 우 스 신 축							
축 사 신 축 (개 보 수)							
농 기 계 구 입							
과 원 조 성							
주 택 구 입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시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 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자체자금		
신규출자		
외부차입		
기 타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통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4호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관리조례” 를 “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로 한다.

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
- 13.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

제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로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

- 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제9조제3항 각 호외의 부분 중 “각호외1에” 를 “각 호외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대부받은 융자금으로 본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아 상환중에 있는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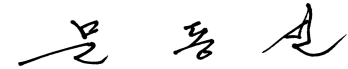
신 · 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및운영관리조례</p> <p>제3조(용자대상사업) 용자대상사업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p> <p>1. ~ 11. (생략)</p> <p><u><신설></u></p> <p><u><신설></u></p> <p>12. 기타 생산소득사업 등</p> <p>제4조(용자대상) ① <u>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 또는 가구(이하 가구 라 한다)로서 관내에 2년 이상 거주한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1. ~ 3. (생략)</p> <p>② (생략)</p> <p>제6조(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 <u>가구당 용자한도액은 1천만원이하로 하되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한다.</u></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군산시농어촌소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p> <p>제3조(용자대상사업) ----- ----- <u>각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대상사업</u></p> <p><u>13.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사업</u></p> <p>14. (현행 제12호와 같음)</p> <p>제4조(용자대상) ① <u>용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가구(이하 “가구”라 한다)로서 관내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세대와 「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 세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u></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조(용자한도 및 이율등) ① <u>가구당 용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u></p> <p><u>1. 2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5년 균분 상환</u></p> <p><u>2.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년 거치 7년 균분 상환</u></p> <p><u>3.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u></p> <p>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② (생략)</p> <p>③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일 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④ (생략)</p>	<p>제9조(융자금의 상환)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5호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을 “군산시 시립예술단”으로 한다.

제2조 중 “예술단”을 “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예술단은 단장 및 각 단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 13명, 총무 1명, 악보, 기획, 악기 각 1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2. 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기획, 총무, 악보 각 1명, 수석 4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2인”을 “2명”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운영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년”을 “연”으로 한다.

제15조제2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별지 제1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 중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u></p>	<p><u>군산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지방문화 창달을 위하여 <u>군산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군산시 시립예술단</u>----- ----- -----.</p>
<p>제2조(예술단) 예술단에 <u>교향악단, 합창단을 둔다.</u></p>	<p>제2조(예술단) <u>군산시 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u>-----.</p>
<p>제3조(구성) 예술단은 단장 및 각 단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시장 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인과 수석 13인, 총무 1인, 악보, 기획, 악기 각 1인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p> <p>2. <u>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인과 반주자 2인, 기획, 총무, 악보 각 1인, 수석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p>	<p>제3조(구성) 예술단은 단장 및 각 단으로 구성하여 단장은 부시장 이 되고 각 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교향악단은 지휘자, 부지휘자,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 13명, 총무 1명, 악보, 기획, 악기 각 1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p> <p>2. <u>합창단은 지휘자, 트레이너,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기획, 총무, 악보 각 1명, 수석 4명 및 상임단원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예술단을 지휘 감독하여 각 단을 총괄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직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단원의 위촉) ①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p> <p>② <삭제></p> <p>③단원의 위촉 연령은 만 35세이 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p>	<p>제5조(단원의 위촉) 상임단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공개전형이나 음악계의 권위기관 또는 학계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5조의2(단원의 정년) 단원의 정년은 교향악단 만 57세, 합창단 만 50세(사무직은 만 57세)로 하고 정기평정시 성적이 탁월(평균 90점 이상)한 자는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운영위원회) ① (생략)</p> <p>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교향악단 ·합창단지휘자와 예총지부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시장이 위촉하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한다. 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의 회의참석을 제척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운영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1명----- -- 10명 ----- -----.</p> <p>③----- ----- ----- ----- -- 2명----- ----- 단, 운영위원회----- -----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략)</p>	<p>제12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p> <p>1. ~ 4. (생략)</p>
<p>제14조(공연) ① (생략)</p> <p>②정기공연은 년 2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공연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p>	<p>제14조(공연) ① (현행과 같음)</p> <p>②----- 연 ----- ----- -----.</p>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입장료 징수) ① (생략) ② 유료입장권(별지 제1호서식)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내에서 무료초대권(별지 제2호서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15조(입장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별지 제1호서식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지 제2호서식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여 입장권 판매총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16조(실비보상) ① (생략) ②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생략)</p>	<p>제16조(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 운영위원회----- ----- -----. 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6호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군산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로 하고,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군산시식품진흥기금”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다.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화장실을 포함한다)와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용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5. “대여”란 시장이 군산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용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제4호 중 “동법시행령이”를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로 한다.

제4조제7호 중 “법시행령 제42조”를 “시행령 제61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 중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군산시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6조 중 “법제71조제3항제1호”를 “법 제8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7조 중 “군산시”를 “군산시 (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를 “시행령 제21조”로 한다.

제4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장(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 비율은 1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식품위생 관련 분야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식품위생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련 분야 과장

2.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조성) (생략)</p> <p>1.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p> <p>2. ~3. (생략)</p> <p>4. 기타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p>	<p>제3조(기금의 조성) (현행과 같음)</p> <p>1. --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p> <p>2. ~3. (현행과 같음)</p> <p>4. ---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으로 -----</p>
<p>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p> <p>1. ~ 6. (생략)</p> <p>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p> <p>8.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시행령 제61조 ----- -----</p> <p>8. (현행과 같음)</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생략)</p> <p>④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p> <p>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지방재정법」----- ----- ----- -----</p> <p>⑤ ----- ----- 「군산시재무회계규칙」----- -----</p>
<p>제6조(용자계획 수립) 시장은 법제71조제3항제1호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 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자총액·용자조건·용자절차등의 용자계획을 수립한다.</p>	<p>제6조(용자계획 수립) --- 법 제89조제3항제1호----- ----- ----- -----</p>
<p>제7조(용자대상) 기금의 용자대상은 군산시 관내에서 동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시설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 할 자와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p>	<p>제7조(용자대상)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시행령 제21조----- ----- -----</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p>
<신 설>	<p>제1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신 설>	<p>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식품위생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p>
<신 설>	<p>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제4장 보칙	제5장 보칙
제12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생략)	제18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3조(시행규칙) (생략)	제19조(시행규칙) (현행 제13조와 같음)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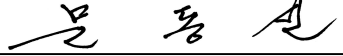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

군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8호

군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 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주차수입금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 는 자주식으로 한다.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 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1.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기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설치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단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 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11조 <삭제 98.11.26></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p>②.....제2호에 따른.....</p> <p>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삭제 98.11.26></p>	<p>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frac{\text{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 인원}}{210} \times \frac{\text{철도연장(km)}}{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관리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 로 하는 법인인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	시장이 정하는 금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1. 제6조제1 항제1호의 경우	공개경쟁입 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노인회, 주민 자치위원 회 등 주민자 율조직	수의계약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재래시장활성 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비 영리 법인·단체	수의계약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2. 제6조제1항 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 찰	주차수입금 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기타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단위 로 선납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 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 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 한 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신 설 >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장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10. 창고시설
11. 기타 건축물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19호

군산시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군산시장은 제2조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의회 제137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조례 제920호

군산시부정수도사용신고포상금지급조례 폐지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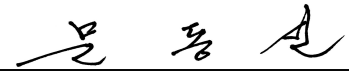
군산시 부정수도 사용신고 포상금지급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
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규칙 제 446호

군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새만금지원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새만금개발사업 총괄 추진업무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시본청 소관 중 정보통신담당관란 다음에 새만금지원 담당관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시본청 소관 중 총무과장란의 기록관리업무 분야란과 청사관리업무 분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기획예산과장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시분청 소관 중 투자지원과장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향
만물류과장란의 새만금지원업무 분야란을 삭제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시분청 소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란과 복지지원과장란
과 여성복지과장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시분청 소관 중 문화체육과장란의 수련업무 분야란 다
음에 근대문화시설업무 분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시분청 소관 중 환경위생과장란의 위생지도업무 분야
란 다음에 자전거정책업무 분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보급과장란의 연구개발업무
분야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분장사무표 읍·면·동 소관 중 읍면장란의 주민생활업무분야와 민
원업무 분야란과 동장란의 주민생활업무분야(단독설치해당동)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새만금지원 담당관	새만금지원 업무분야	1. 새만금 개발관련 총괄기획 및 조정 2. 새만금 종합홍보 및 투자유치 3. 새만금개발특별법 운영 4. 새만금지구내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업무 5.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조정업무 6. 새만금관련 연안어민 관련업무 7.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새만금지원 업무분야	8. 새만금 관광홍보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9. 새만금 관광 수용태세 확립 10. 새만금관련 관광 이벤트 업무 11. 새만금관련 관광체험 상품개발 12. 고군산연계 관광체험 상품개발
	새만금개발 업무분야	13. 새만금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 관련업무 14. 새만금 기반시설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 15. 외곽 방조제 다기능시설 구축업무 16. 탐방객 편의시설 추진 17. 친환경다기능 방조제 개발업무 18. 새만금 신항만 개발업무 19. 새만금 공항 개발업무
총무과장	기록관리 업무분야	67. 일반 기록물의 수발 및 통제 68. 수신 전자문서 해당부서 배포 69. 공인관리 70. 발간실 및 FAX실 운영 71.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72.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73. 일반 및 등기 우편물 관리 74.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5.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76.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관리 77.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 78. 미등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79.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 80.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81.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82.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83.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84.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 85. 그밖에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청사관리 업무분야	86. 관사 유지관리 87. 전기, 위생, 냉·난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88. 공무실의 운영 89. 본청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90. 청내 소방훈련 및 자체방화관리 91. 본청 청사 청소 및 소독관리
기획예산 과 장	기획업무 분 야	1. 시정 방침과 시정 목표의 책정 2. 시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의 수립 조정 4. 주요업무계획 및 기본 운영계획의 수립 5. 대통령·총리·장관·지사·시장 지시사항 처리 6. 공약사항(대통령·지사·시장) 관리 7. 시정 조정위원회 운영 8. 행정규제개혁 업무 9. 군산시 상징물 관리 10. 목표관리제 업무추진 11. 시민제안제도 운영 12. 시정계획 및 시정연설 작성 13. 시책개발 업무추진 14. 국가사업 발굴 및 예산확보추진 총괄 15. 과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6. 저탄소녹색성장 총괄업무 17.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산업무 분 야	18. 시 재정계획 수립 및 조정 통제 19.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20.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배정 21. 예산집행의 지원(명칭변경) 22.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과 집계 23. 국·도비 보조금 관리 24. 지방교부세(보통, 특별, 분권) 관리 25.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26. 민·관 공동출자 사업(제3섹터) 기획 조정 27. 경영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 조정 28. 공사 정관 및 규칙의 제정, 개정 29. 공사 회계 제도 운영 지도 30. 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 지도 31. 기금 관리 32. 이월예산 확정 및 관리 33.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운영 34.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 35. 지방재정 공시 36.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37.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8.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39.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40. 투·융자 심사 41.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외협력 업무분야	42. 시 의회 운영지원 43.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에 관한사항 44.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45.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46.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등 47. 의정비 관련업무 48. 한미친선협의회등 주한미군 업무 49.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50. 남북교류 업무추진 51. 명예시민 업무 52.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53. 재경향우회 관련업무 54. NGO 관리
	창의분권 업무분야	55.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6.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사항 57.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계획 58.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5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60. 지역생활 여건개선 61. 행정혁신계획 수립 및 발굴추진 62.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63. 혁신관련 고객관리 대상업무 선정 및 프로세서 개선 64. 지방이양업무 추진 관련 65.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66.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협력 및 홍보
	법무업무 분야	67. 법무 행정 종합기획 조정 68.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69.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70. 훈령 예규등 중요 문서의 심사 71. 법제 자료의 조사 및 수집 연구 72. 법규의 편찬 73. 법령 및 관보의 배부 74. 소송 사무의 검토 및 통제 75. 소송사건의 연락 및 통제 76. 행정 심판 업무 77. 입법 및 행정 예고
	국제협력 업무분야	78. 국제협력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79.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업무 및 교류사업 실무기획단 운영 80. 공무원 해외여행 관련 업무 81. 국제화 추진 민간협의회 운영 82. 국제 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83. 대시민 국제화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84. 국제간 문화 교류의 증진 업무 85. 기타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
투자지원 과 장	투자유치 업무분야	1. 군산시투자지원위원회 운영 2. 투자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3.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업무 4. 국제통상 및 무역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5.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기업도시관련 지원업무 6. 기업세제 지원 7.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관리
	기업지원 업무분야	8.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9. 사업소 예산·회계 기획 및 집행 10.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11.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12.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13.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14.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및 업체조 허가 15.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 조정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17.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 업무 18.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19.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 감독 20.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 작성 21.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22. 군장산업입주기업협의회 업무지원
	산단관리 업무분야	23.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 및 각종 보상 24.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분양 25. 산업단지내 공사발주 및 설계 26. 산업단지내 공사감독 및 보고 27. 지방산업단지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28.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사업계획 승인 29.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30. 지방산업단지내 공장 등의 양도 및 임대 동의 31. 농공단지 운영관리 32.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 33.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업체 실태조사 3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5. 공장이전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3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3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도점검
산업인력양성 업무분야	38. 고용촉진 훈련사업 39.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41. 기능인력 수급대책 42.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에 관한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주민생활 지원과장	복지기획 업무분야	1.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3. 군경묘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5. 3.1절, 현충일행사 6. 부랑인시설업무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의회 업무 관련 전반 9.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1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3.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 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결과 평가 15.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16.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1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8.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1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21.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22. 긴급복지업무전반 23.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2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25.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2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7.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28.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29.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서비스) 운영지원 30.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31.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32.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33.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계획 수립 34.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35.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통합조사관리 업무분야	36.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한 부모 가족 지원, 장애수당,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p><u>자활지원 등의 사업)</u> 37. <u>복지급여대상자 보장 결정 및 통보</u> 38. <u>복지급여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u> 39. <u>복지급여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급여생성 및 확정</u> 40. <u>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활동평가</u> 41. <u>기초생활보장 중점관리 자격조사</u> 42. <u>상담실 운영</u></p>
	<p>자원봉사 업무분야</p>	<p>43. <u>자원봉사종합센터의 관리 및 사업지원</u> 44. <u>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u> 45. <u>각종 자원봉사관련 행사 지원</u> 46. <u>자원봉사단체의 지원</u> 47. <u>자원봉사자 보험 가입</u> 48. <u>여성자원봉사회 관리 및 지원</u></p>
<p>복지지원 과장</p>	<p>기초생활 업무분야</p>	<p>1. <u>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u> 2. <u>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u> 3. <u>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u> 4. <u>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u> 5. <u>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u> 6. <u>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u> 7. <u>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u> 8. <u>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u> 9. <u>나운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u> 10. <u>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u> 11. <u>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관리</u> 12. <u>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u> 13. <u>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u> 14. <u>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u></p>
	<p>자활복지 업무분야</p>	<p>15. <u>시 운영 자활사업 추진</u> 16. <u>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사업 추진</u> 17. <u>제반 자활사업 추진</u> 18. <u>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u> 19. <u>자활 공동체 지원</u> 20. <u>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관련 업무</u> 21. <u>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효율사업 지원</u></p>
	<p>재활복지 업무분야</p>	<p>22. <u>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u> 23. <u>장애인등록 및 관리</u> 24. <u>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u> 25. <u>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26. <u>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27. <u>장애인복지시설 입·퇴소 관리</u> 28. <u>장애인복지관련 법인 설립</u> 29. <u>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u> 30. <u>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u> 31. <u>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u> 32. <u>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업</u> 33. <u>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u> 34. <u>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u></p>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35. 장애연금지원사업 추진 36.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 37.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 38.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 39. 기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40.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41.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4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43.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경로복지 업무분야	45. 경로복지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46. 기초노령연금 지원 47.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48. 노인일거리마련사업운영 추진 49.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업 50.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 추진 51. 노인건강진단사업 52.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5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54.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55.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56.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57.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 58.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주최 59.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60. 가출노인관리 운영 61. 경로당 운영 지원 6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추진 63.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추진 6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65.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실버타운조성 사업추진 66. 노인취업알선 지원 67. 경로우대시책 추진
	복지시설 업무분야	68.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69.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70.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71.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지원 72.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73. 경로당 설치신고 74.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지원 75.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76.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사업 추진 77.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78.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79. 노인복지시설 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80.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81.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82. 공·시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83.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여성복지 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시설물 유지 관리 3. 일반 사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4.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5.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6.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7.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8.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9.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10.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11.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12.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13.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14.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15. 여성단체 지도 육성 16.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17. 여성발전기금 관리 18.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19.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0.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21.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2.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 23.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관리 26.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27.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28.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지원사업 29.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30. 여성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육지원 업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31. 보육정책 수립 3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33.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34.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35.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36.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37.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38.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39. 보육시설 평가인증 40.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41.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42.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43.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44.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45.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46.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47.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48.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9. 보육시설 행정쟁송 50.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5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52.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업무분야	53.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54. 아동학대 예방사업 55. 결식우려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일) 56.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57.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58. 실종아동 보호 59.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60.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6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62. 요보호아동 결연 63. 퇴소아동 자립지원 64.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65.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66.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67.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68.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여성교육 업무분야	69.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70.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 71. 피해자치료전담의료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 72.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 73. 가출부랑 여성의 예방 및 선도 74. 기지촌 지역 여성보호 및 교육 75.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76. 여성 기술 기능 교육 77. 취미 교실 운영 78. 여성 사회 교육 79. 교육 기자재 관리 80.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 81.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 82.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납 83. 가사도우미 운영 84.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 85. 여성교육장 시설물 유지 관리 86.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87. 보호시설 입·퇴소관리 88.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 89. 성매매예방 교육 90.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 91.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 92. 기타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문화체육 과 장	근대문화시설 업무분야	77.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벨트화 사업 78. 근대문화중심도시 사업추진 관리 79. 근대역사 건축물 정비지구사업
환경위생 과 장	자전거정책 업무분야	79.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 80.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 81.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 82. 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 장	연구개발 업무분야	27. 새기술 실증 시범 28. 농업인기술개발사업 29. 소득작목 지역적응 실증시험 30. 조직배양실 운영 및 우량묘 생산보급 31. 기타 농업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2.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및 복합생균제 배양 제조·보급 33. 가축사양관리 기술지도 34. 축산시범사업 및 친환경 축산시설 운영 35. 농산부산물 등 부존자원 사료화 제조이용 지도 36. 환경친화적 유용미생물 배양 제조보급 37. 친환경녹색농업 수질연구 업무 추진

[읍면동장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 위원관리, <u>사례관리 대상발굴</u> ,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원업무 분 야	<u>가족관계등록</u> ,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동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단독설치 해당동)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복지관련분야(<u>사례관리 대상발굴</u> , 자활 및 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6조의2(새만금지원담당관) 새만금지원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새만금개발사업총괄 추진업무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p>

현행			개정안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소관]</p>			<p>[별표 1] 분장사무표(제3조 관련) [시본청소관]</p>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장사무	
(신설)	(신설)	(신설)	새만금지원 담당관	새만금지정 업무분야	1. 새만금 개발관련 총괄기획 및 조정 2. 새만금 종합홍보 및 투자유치 3. 새만금 개발특별법 운영 4. 새만금지구내 종합개발계획에 관한업무 5. 새만금지구 행정구역 조정업무 6. 새만금관련 연안어민 관련업무 7. 과내 다른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신설)			새만금지원 업무분야	8. 새만금 관광홍보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9. 새만금 관광 수용태세 확립 10. 새만금관련 관광 이벤트 업무 11. 새만금관련 관광체험 상품개발 12. 고군산연계 관광체험 상품개발
	(신설)	(신설)			새만금개발 업무분야	13. 새만금 각종 기반시설 구축 등 관련업무 14. 새만금 기반시설에 따른 민원업무 처리 15. 외곽 방조제 다기능시설 구축업무 16. 탐방객 편의시설 추진 17. 친환경다기능 방조제 개발업무 18. 새만금 신항만 개발업무 19. 새만금 공항 개발업무
총무과장	기록관리 업무분야	67. 일반문서의 수발 및 통제 68. 보존기록물의 관리 69. 공인 관리 70. 문서 송달원의 근무감독 71. 발간실 운영 72. FAX실 운영 73.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74. 사업소읍면동 문서송달 업무 75. 행정자료실 관리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총무과장	기록관리 업무분야	67. 일반 기록물의 수발 및 통제 68. 수신 전자문서 해당부서 배포 69. 공인관리 70. 발간실 및 FAX실 운영 71.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 72.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 73. 일반 및 등기 우편물 관리 74.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75. 소관 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 76. 기록물 분류기준표의 관리 77.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통보 78. 미등록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 79.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평가 관리 80.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81. 군산시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지원 82.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 83. 기록관리시스템 설치 및 운영 84. 주요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 제공 85. 그밖에 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에	

현		행		개		정		안	
	청사관리 업무분야	76. 관사 유지관리 77. 전기, 위생, 냉난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78. 공무실의 운영 79. 본청 청사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80. 청내 소방훈련및자재방화관리 81. 본청 청사 청소 및 소독관리							<u>관한 사항</u>
기획예산 과장	기획업무 분야	1. ~ 15.(생략) (신설) 16.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기획예산 과장	기획업무 분야	1. ~ 15.(현행과 같음) 16. <u>저탄소녹색성장 총괄업무</u> 17.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예산업무 분야	17. 시 재정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18.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19.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배정 20. 예산집행의 지원(명칭변경) 21.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과 집계 22. 국도비 보조금 관리 23. 지방교부세(보통, 특별,분권) 관리 24.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25. 민관 공동출자 사업(제3섹터) 기획 조정 26. 경영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 조정 27. 공사 정관 및 규칙의 제정, 개정 28. 공사 회계 제도 운영 지도 29. 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지도 30. 기금 관리 31. 이월예산 확정 및 관리 32.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운영 33.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 34. 지방재정 공시 35.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36.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7.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38.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39. 투융자 심사 40.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예산업무 분야	18. 시 재정계획수립 및 조정통제 19.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20. 예산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의 배정 21. 예산집행의 지원(명칭변경) 22. 지방채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 신청과 집계 23. 국도비 보조금 관리 24. 지방교부세(보통, 특별,분권) 관리 25. 공기업 경영의 종합기획 조정 26. 민관 공동출자 사업(제3섹터) 기획 조정 27. 경영 수익사업의 계획 수립 조정 28. 공사 정관 및 규칙의 제정, 개정 29. 공사 회계 제도 운영 지도 30. 공기업 예산편성 및 결산지도 31. 기금 관리 32. 이월예산 확정 및 관리 33. 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운영 34. 주민참여 예산편성 운영 35. 지방재정 공시 36.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 37. 투자심사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38.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39.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운영 40. 투융자 심사 41.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대외협력 업무분야	41. 시 의회 운영지원 42.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에 관한사항 4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44.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45.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등 46. 의정비 관련업무 47. 한미친선협의회등 주한미군 업무 48.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49. 남북교류 업무추진 50. 명예시민 업무 51.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52. 재경향우회 관련업무 53. NGO 관리	대외협력 업무분야	42. 시 의회 운영지원 43. 의회자료 제출 및 협의에 관한사항 44.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45. 의회 운영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조사 46. 의회운영 제도개선 연구등 47. 의정비 관련업무 48. 한미친선협의회등 주한미군 업무 49. 국내거주 외국인 지원 50. 남북교류 업무추진 51. 명예시민 업무 52. 국내자매도시 관련업무 53. 재경향우회 관련업무 54. NGO 관리					
	창의분권 업무분야	54.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55.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사항	창의분권 업무분야	55.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현행		개정안	
	56.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계획 57.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58.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59. 지역생활 여건개선 60. 행정혁신계획 수립및발굴추진 61.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62. 혁신관련 고객관리 대상업무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63. 지방이양업무 추진 관련 64.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65.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업무분야 56. 지역혁신정책에 관한 사항 57. 지역특화발전특구 사업 계획 58. 지역진흥재단 운영지원 59.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60. 지역생활 여건개선 61. 행정혁신계획 수립및발굴추진 62. 행정혁신관련 자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개발 63. 혁신관련 고객관리 대상업무 선정 및 프로세스 개선 64. 지방이양업무 추진 관련 65. 일하는 방식 개선 관련 66. 행정혁신 및 지방분권 관련 대외 협력 및 홍보	
법무업무분야	66. 법무 행정 종합기획 조정 67.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68.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69. 훈령 예규등 중요문서의 심사 70. 법제 자료의 조사및수집 연구 71. 법규의 편찬 72. 법령 및 관보의 배부 73. 소송 사무의 검토 및 통제 74. 소송사건의 연락 및 통제 75. 행정 심판 업무 76. 입법 및 행정 예고	법무업무분야 67. 법무 행정 종합기획 조정 68. 조례규칙의 심사 및 공포 69.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70. 훈령 예규등 중요문서의 심사 71. 법제 자료의 조사및수집 연구 72. 법규의 편찬 73. 법령 및 관보의 배부 74. 소송 사무의 검토 및 통제 75. 소송사건의 연락 및 통제 76. 행정 심판 업무 77. 입법 및 행정 예고	
국제협력업무분야	77. 국제협력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78. 국제 차매도시간 교류업무 및 교류사업 실무기획단 운영 79. 공무원 해외여행 관련업무 80. 국제화 추진 민간협의회 운영 81. 국제 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82. 대시민 국제화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3. 국제간 문화 교류의 증진업무 84. 기타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	국제협력업무분야 78. 국제협력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79. 국제 차매도시간 교류업무 및 교류사업 실무기획단 운영 80. 공무원 해외여행 관련업무 81. 국제화 추진 민간협의회 운영 82. 국제 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83. 대시민 국제화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4. 국제간 문화 교류의 증진업무 85. 기타 국제화와 관련된 업무	
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업무분야 1. ~ 6.(생략) (신설) 기업지원업무분야 7.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8. 사업소 예산회계 기획 및 집행 9.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10.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작성 11.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12.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13.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및 연계조 허가 14.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조정 15.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16.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업무 17.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18.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19.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작성 20.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21. 군장산업입주기업협의회 업무지원	투자지원과장 투자유치업무분야 1. ~ 6.(현행과 같음) 7. <u>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관리</u> 기업지원업무분야 8. 국가 및 지방 산업단지 지원 및 유지관리 9. 사업소 예산회계 기획 및 집행 10. 산업단지관련 민원 처리 11. 수출동향분석 및 지표관리작성 12. 산업단지 홍보 및 안내 13. 산업단지 기업유치 지원 협조 14. 기타 공업진흥에 관한 사항 및 연계조 허가 15. 중소기업 육성시책 종합기획조정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업무 17.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지원업무 18. 중소기업 육성지원 자금 업무 19. 상공단체 육성지원 및 지도감독 20. 수출동향 분석 및 지표관리작성 21. 중소벤처기업 지원업무 22. 군장산업입주기업협의회 업무	

현행		개정안	
<p>산단관리 업무분야</p> <p>22.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 및 각종 보상 23.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분양 24. 산업단지내 공사발주 및 설계 25. 산업단지내 공사감독 및 보고 26. 지방산업단지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27.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사업계획 승인 28.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29. 지방산업단지내 공장 등의 양도 및 임대 동의 30. 농공단지 운영관리 31.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 32.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 업체 실태조사 3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4. 공장이전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35.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3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도점검</p>	<p>22.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 및 각종 보상 23.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분양 24. 산업단지내 공사발주 및 설계 25. 산업단지내 공사감독 및 보고 26. 지방산업단지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27.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사업계획 승인 28.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29. 지방산업단지내 공장 등의 양도 및 임대 동의 30. 농공단지 운영관리 31.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 32.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 업체 실태조사 33.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4. 공장이전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35.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36.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도점검</p>	<p>지원</p> <p>23.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 및 각종 보상 24.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분양 25. 산업단지내 공사발주 및 설계 26. 산업단지내 공사감독 및 보고 27. 지방산업단지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28.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사업계획 승인 29.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30. 지방산업단지내 공장 등의 양도 및 임대 동의 31. 농공단지 운영관리 32.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 33.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 업체 실태조사 3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5. 공장이전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3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3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도 점검</p>	<p>산단관리 업무분야</p> <p>23.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 매입 및 각종 보상 24.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용지분양 25. 산업단지내 공사발주 및 설계 26. 산업단지내 공사감독 및 보고 27. 지방산업단지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28. 지방산업단지내 공장사업계획 승인 29. 산업단지 특별회계 관리 30. 지방산업단지내 공장 등의 양도 및 임대 동의 31. 농공단지 운영관리 32. 공장등록 관리업무 및 지도감독 33. 공장가동 상황파악 및 제조 업체 실태조사 3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사항 35. 공장이전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36.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추진 37.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지도 점검</p>
<p>산업인력양성 업무분야</p> <p>37. 고용촉진 훈련사업 38.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39.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40. 기능인력 수급대책 41.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 에 관한사항</p>	<p>37. 고용촉진 훈련사업 38.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39.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40. 기능인력 수급대책 41.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 에 관한사항</p>	<p>38. 고용촉진 훈련사업 39.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41. 기능인력 수급대책 42.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 에 관한사항</p>	<p>산업인력양성 업무분야</p> <p>38. 고용촉진 훈련사업 39.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 40.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 41. 기능인력 수급대책 42. 기타 우리시 유치기업 산업인력 에 관한사항</p>
<p>항만물류 과장</p> <p>새만금지원 업무분야</p> <p>22. 새만금관련 홍보활동 지원 23. 새만금 예산 및 관련업무 협의, 지원 24. 새만금지구내 기업유치, 관광 기반시설 구축지원 25. 새만금 내부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지원 26. 새만금 신항 건설업무 전반 27. 새만금 특별법 시행 업무협의</p>	<p>22. 새만금관련 홍보활동 지원 23. 새만금 예산 및 관련업무 협의, 지원 24. 새만금지구내 기업유치, 관광 기반시설 구축지원 25. 새만금 내부개발 및 토지이용 계획 지원 26. 새만금 신항 건설업무 전반 27. 새만금 특별법 시행 업무협의</p>	<p>(삭 제)</p> <p>22. ~ 27.(삭 제)</p>	<p>항만물류 과장</p>
<p>주민생활 지원과장</p> <p>복지기 획 업무분야</p> <p>1.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3. 균형모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5. 3.1절, 현충일행사 6. 부랑인시설업무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의회 업무 관련 전반 9.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12.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13.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4.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p>	<p>1.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3. 균형모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5. 3.1절, 현충일행사 6. 부랑인시설업무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의회 업무 관련 전반 9.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1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3.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p>	<p>1.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3. 균형모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5. 3.1절, 현충일행사 6. 부랑인시설업무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의회 업무 관련 전반 9.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1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3.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p>	<p>주민생활 지원과장</p> <p>복지기 획 업무분야</p> <p>1. 국·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과 예산 및 회계, 인력관리 업무전반 3. 균형모지 현충 시설물 관리 및 국가유공자 안장사무 4. 주민생활지원서비스종합계획 수립·조정 5. 3.1절, 현충일행사 6. 부랑인시설업무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의회 업무 관련 전반 9. 공익근무요원 관리 10.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11. 행정재산 시설 및 물품 관리 12.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13. 저출산·고령화 대책 계획 수립 운영</p>

현행		개정안	
	15.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4.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 15. 사회복지관련 행사 추진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16.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7.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1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9.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20.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21. 긴급복지업무전반 22.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23.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24.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25.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26. 지역자원의 발굴.동원.연계.관리	서비스연계 업무분야	16. 기타 국내 타과 및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7.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18. 지역육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19.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 이웃돕기 및 후원결연 21. 저소득층 생계곤란 보호금 관련 업무 22. 긴급복지업무전반 23. 서비스 제공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24. 사회복지서비스 제공대상자 결정 및 통지 25. 대상자별 서비스 조정.연계 26.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7. 지역자원의 발굴.동원. 연계. 관리 28. 사회복지공동모금회관련 업무 지원 29. 시소와 그네(보육지원통합 서비스) 운영지원 30. 사회복지협의회 보조금 지원 31. 군산시 희망129센터 운영.관리 32.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운영.관리 33. 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34. 지역별 사례관리의 운영체계 수립 35. 사례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통합조사 업무분야	27. 복지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 28. 복지대상자 보장결정 및 급여 통보 29.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30. 상담실 운영	통합조사관리 업무분야	36. 복지급여대상자 신규신청자 조사 (대상사업 :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한 부모 가족 지원, 장애수당, 자활지원 등의 사업) 37. 복지급여대상자 보장 결정 및 통보 38. 복지급여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39. 복지급여대상자 자격 변동사항 관리, 급여생성 및 확정 40.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 활동 평가 41. 기초생활보장 증점관리 자격조사 42. 상담실 운영
자원봉사 업무분야	31. 자원봉사센터의 관리 및 사업 지원 32.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33. 각종 자원봉사관련 행사 지원 34.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35.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자원봉사 업무분야	43. 자원봉사종합센터의 관리 및 사업지원 44. 자원봉사 발전위원회 운영 45. 각종 자원봉사관련 행사 지원 46.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현		개 정 안	
복지지원 과장	기초생활 업무분야	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국민기초 수급 대상자 급여 지원 3. 차상위 계층 지원 및 관리업무 전반 4.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5. 의료보호 대상자 지원관리 6. 의료보호 특별회계 업무 7.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8.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9. 영구임대apt 입주 신청 업무 10. 부정수급자 관리 11.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7.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u>48. 여성자원봉사회 관리 및 지원</u> 1. 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u>2.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및 부정수급자관리</u> <u>3. 차상위계층 정부양곡지원</u> 4. 저소득층장학금지원사업 <u>5.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관리</u> <u>6. 의료급여 특별회계 업무</u> 7. 의료보호 대불금 지원 및 관리업무 8.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u>9. 나운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및 민원처리</u> <u>10. 저소득층 건강보험료지원</u> <u>11. 의료급여 상해외인 조사관리</u> <u>12. 장애인 보장구지원 관리</u> <u>13.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관리</u> 14. 기타 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자활복지 업무분야	12. 지역봉사사업 추진 13.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근로 유지형 자활사업 추진 14. 제반 자활사업 추진 15. 자활후견기관 지원 및 관리 16. 자활 공동체 지원 17.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생업자금 관련 업무	자활복지 업무분야 <u>15. 시 운영 자활사업 추진</u> <u>16. 가사간병방문 도우미 바우처 사업 추진</u> 17. 제반 자활사업 추진 <u>18. 지역자활센터 지원 및 관리</u> 19. 자활 공동체 지원 <u>20. 자활기금 및 생업자금 관련 업무</u> <u>2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에너지 효율사업 지원</u>
	재활복지 업무분야	18.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19.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20.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21.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2. 장애인등록 및 관리 23.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재활복지 업무분야 22. 장애인복지계획 수립 및 추진 23. 장애인등록 및 관리 <u>24.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u> <u>2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u>26.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u> <u>27. 장애인복지시설 입·퇴소 관리</u> <u>28. 장애인복지관련 법인 설립</u> <u>2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u> <u>3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추진</u> <u>31.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추진</u> <u>32.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지원사 업</u> <u>33.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u> <u>34.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 원</u> <u>35. 장애연금지원사업 추진</u> <u>36. 장애인의료비 및 등록진단비 지원</u> <u>37. 장애인 자립자금대여사업</u> <u>38. 장애인재활보조기구교부사업</u>

현 행		개 정 안	
경로복지 업무분야	24. 경로복지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25. 노인수당(교통수당, 경로연금, 장수수당) 지원 26.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27. 노인일거리마련사업운영 추진 28.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업 29.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 30. 노인건강진단사업 31.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32.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33.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34.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35.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36.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 3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추진 38.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39. 가출노인관리 운영 40. 일거리공동작업장 운영지원 41.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추진 42. 노인돌봄미시시설 이용권 지원 43.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44. 노인취업알선 지원 45. 경로우대시책 추진	경로복지 업무분야	39. 기타 재가장애인생활안정지원 사업 40.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41. 장애인단체 사무실 개보수 추진 42.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 43. 장애인편의시설 건축협의 4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45. 경로복지업무기획 및 업무전반 46. 기초노령연금 지원 47.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추진 48. 노인일거리마련사업운영 추진 49.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및 결연사업 50. 경로식당 운영 및 재가노인식사 배달사업 추진 51. 노인건강진단사업 52. 노인회운영 관리지원 53.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지원 54. 경로당 활성화사업 추진 55. 노인대학 신고 및 운영지원 56. 노인복지기금관리 및 운영 57. 어버이날 행사 및 경로효친 업무 추진 58.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추진 59. 경로복지 관련 법인설립 추진 60. 가출노인관리 운영 61. 경로당 운영 지원 62. 경로당 순회프로그램관리자 운영추진 63. 노인돌봄미우치 사업 추진 64. 독거노인생활관리사 파견사업 65.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실버타운조성 사업추진 66. 노인취업알선 지원 67. 경로우대시책 추진
복지시설 업무분야	46.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47.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원 48.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원 49.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원 50.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실버타운조성 사업추진 51.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52. 경로당 설치신고 및 운영지원 53. 1경로당 1일거리갯기사업 54.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 지원 55. 치매노인그룹홈 신축 및 운영 지원	복지시설 업무분야	68. 노인복지시설업무 기획 및 업무 총괄 69.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원 70.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원 71. 노인재가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원 72. 노인복지시설 입.퇴소 운영관리 73. 경로당 설치신고 74. 소규모다기능시설 신축 운영 지원 75.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76.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사업 추진 77.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현행		개정안	
	56. 종합재가복지센터 신축 및 운영 지원 57. 노인조건부시설 관리업무 58. 노인수발보현 관련업무 59. 경로당 신축, 증축, 개축, 개보수 사업 추진 60.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61.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62. 노인복지시설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63. 노인돌봄미사업 추진 64.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65.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66. 공·시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67.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78. 노인재가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추진 79. 노인복지시설관련 사회복지법인 설립추진 80. 화장장 및 납골당 관리 81. 매·화장 및 묘지에 관한 업무 82. 공·시설 공원묘지에 관한 사무 83. 새마을회관, 모정관리
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1. 복지관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 2. 시설물 유지 관리 3.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4.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5.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6.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7.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8.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9.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10. 여성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1.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12.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13.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14.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15.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16. 여성단체 지도 육성 17.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18. 여성발전기금 관리 19.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여성복지과장	여성정책 업무분야 1. <u>여성복지과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조정</u> 2. 시설물 유지 관리 3. 일반 서무, 예산, 회계, 경리, 재산관리 등 4. 여성 복지 업무 기획 조정 5.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 및 선도 사업 6.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관리 및 지원 보호 7. 저소득 모자·부자세대 취업 및 상담 8. 모자·부자가정 건강진단 사업 및 생활, 기술교육 9. 여성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감독 10. 여성권리 증진 및 지위향상을 위한 시책 개발 11. 여성 정책 개발 종합 기획 12. 여성 정책 시행개선 및 평가 분석 13. 여성 사회 활동 대상 발굴 14. 건전 가정 육성 및 여성관련 각종 행사 15. 여성단체 지도 육성 16. 여성 성차별 의식개선정책에 관한 사항 17. 여성발전기금 관리 18. 군산시 성희롱 관련 지도 감독 19. <u>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 20. <u>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u> 21. <u>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u> 22. <u>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관리</u>

현 행		개 정 안	
			23. 아이돌보미 사업 지원 2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25.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 관리 26. 결혼이주여성 방문교육사업 27.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28. 다문화가족 통역요원 지원 사업 29. 국내 결혼중개업소 신고등록 및 지도감독 30. 여성복지과내 다른 업무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보육지원 업무분야	20. 보육정책 수립 21.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22.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23.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24.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25.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26.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27.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28. 보육시설 평가인증 29.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30.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31.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32.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33.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34.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35.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36.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3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38. 보육시설 행정쟁송 39.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40. e-보육 관리 및 운영	보육지원 업무분야	31. 보육정책 수립 32.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관리 33. 보육시설 수급계획 수립 34. 보육시설 인가 및 변경인가 35. 보육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36. 보육시설 설치 사전상담 37. 국공립 보육시설의 위탁 38. 국공립 보육시설 운영 위탁 취소 39. 보육시설 평가인증 40.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소집 41. 보육시설 예산·결산 승인 42. 보육시설 정기(수시) 지도점검 43. 보육시설 시정 및 변경 명령 44. 보육시설의 행정처분(운영정지·폐쇄) 45. 보육시설의 장 업무정지 46. 보육교사 자격정지·자격취소 47. 보육시설 시설장 및 보육교사 청문 48.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9. 보육시설 행정쟁송 50. 보육시설 현황 분기보고 51.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52. 보육료 지원
아동복지 업무분야	41. 아동관련업무 전반 42. 아동건전육성, 권리신장, 관련 사업 43. 지역사회아동보호사업 44. 아동보호사업 45. 아동시설보호사업	아동복지 업무분야	53. 아동관련업무 기획 및 운영전반 54. 아동학대 예방사업 55. 결식우리아동 급식(방학중, 학기중 공휴일) 56. 지역아동센터 설치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57.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58. 실종아동 보호 59. 요보호아동 복지시설 입소 60. 입양가정 지원 (일반, 장애아) 6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관리 및 지원

현행			개정안		
					62. 요보호아동 결연 63. 퇴소아동 자립지원 64. 아동발달지원계좌 (CDA) 지원 65.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 및 지도 감독 66.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 홈) 설치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67. 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68. 아동복지관련 사회복지법인 관리
여성교육 업무분야	46.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 전반 47.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 48. 피해자치료전담의료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 49. 가해자에 대한 상담 및 피해자 법적대응 50.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 51. 가출부랑 여성의 예방 및 선도 52. 기지촌 지역 여성보호 및 교육 53. 윤락여성 및 요보호 여성 선도 보호 사업 54.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55. 여성 기술 기능 교육 56. 취미 교실 운영 57. 여성 사회 교육 58. 교육 기자재 관리 59.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 60.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 61. 각종 사용자 및 수수료 수납 62. 파출부 및 간병인운영 63. 기타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여성교육 업무분야	69. 가정상담 업무 기획 및 운영 전반 70. 성·가정폭력 보호시설지원 및 상담지원 71. 피해자치료전담의료기관업무 및 응급키트관리 72. 요보호 여성관리 및 보호 73. 가출부랑 여성의 예방 및 선도 74. 기지촌 지역 여성보호 및 교육 75. 여성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 76. 여성 기술 기능 교육 77. 취미 교실 운영 78. 여성 사회 교육 79. 교육 기자재 관리 80. 교육성과의 분석 평가 81. 교육 수료자 사후 관리 82. 각종 사용자 및 수수료 수납 83. 가사도우미 운영 84. 아동여성 보호 연대운영 85. 여성교육장 시설물 유지 관리 86. 성·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 변경, 폐지신고 87. 보호시설 입, 퇴소관리 88. 보장시설수급자 책정 및 생계비 지원 89. 성매매예방 교육 90. 공유재산 관리(월명동 18-14) 91. 여성 취업지원사업 운영 92. 기타 여성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 과장	(신 설)	(신 설)	문화체육 과장	근대문화시설 업무분야 77. 근대산업유산활용 예술창작 벨트화 사업 78. 근대문화중심도시 사업추진 관리 79. 근대역사 건축물 정비지구 사업	
환경위생 과장	(신 설)	(신 설)	환경위생 과장	자전거정책 업무분야 79.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추진 80. 자전거주차장 관리 및 사업추진 81. 자전거이용활성화 방안추진 82. 자전거관련조례·위원회 운영	

현			행			개			정			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관과소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기술보급 과장	연구개발 업무분야	27. ~ 36.(생 략) (<u>신 설</u>)				기술보급 과장	연구개발 업무분야	27. ~ 36.(현행과 같음) <u>37. 친환경농업수질연구 업무 추진</u>						
[읍면동 소관]						[읍면동 소관]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위원관리, <u>서비스연계관리 서비스연계관리</u> ,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읍면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서무, 보안, 인사, 교육, 예산, 회계, 선거, 통계, 공보, 관광, 주민자치센터·주민자치위원회 지원·관리, 세외수입, 기부금품의 통제, 복지관련 지역자원발굴·관리·복지위원관리, <u>사례관리 대상발굴</u> , 자활 및 노인일자리 사업장 관리, 기타 다른 업무 분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원업무 분 야	호적,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범죄자파산자 대장정리, 민방위 조직편성 및 운영)					민원업무 분 야	<u>가족관계등록</u> ----- -----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읍면동장	업무분야	분 장 사 무						
동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단독설치 해당동)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 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복지관련분야(<u>서비스연계</u> , 자활 및 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동장	주민생활 업무분야 (단독설치 해당동)	총무, 공보, 감사, 기획예산, 회계, 정보 통신, 민원, 주민등록, 인감, 제증명 발급, 민방위등 일반업무 사회복지관련분야(<u>사례관리 대상발굴</u> , 자활 및 노인복지, 지역자원발굴등)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규칙 제 447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 계	본 정	의 회	보건소	농업기술 센터	사업소	읍	면	동	비 고
	총 관	1330	712	25	95	40	161	13	118	166	
	정 무 직 계	1	1								
	일 반 직 계	1041	574	18	71	1	97	12	104	164	
3 급	소 계	1	1								
	행 정	1	1								
4 급	소 계	8	4	1	1		2				
	행 정	3	1	1			1				
	기 술	1			1						
	행 정·기 술	4	3				1				
5 급	소 계	72	32	3	3		7	1	10	16	
	행 정	29	13				2	1	3	10	
	해 양 수 산	1	1								
	의 무	1			1						
	시 설	3	3								
	보 건·의 무	1			1						
	행 정·농 업	4	1						3		
	행 정·별 정	3		3							
	행 정·사 서	1					1				
	행 정·사 회	3	3								
	행 정·공 업	1					1				
	행 정·해 양 수 산	1								1	
	행 정·시 설	11	6				1		1	3	
	행 정·환 경	1	1								
	보·환·공	1	1								
	행·농·보	1								1	
	행·농·녹	1							1		
	행·농·환	1							1		
	행·보·간	1			1						
	행·전·통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시·환	1						1			
	행·환·녹	1						1			
	행·농·해수	1	1								
	행·보·환·공	1								1	
6 급	소 계	244	148	6	9		25	3	30	23	
	행 정	75	52	3			7			13	
	세 무	2	2								
	사 회 복 지	2	2								
	전 산	1	1								
	공 업	2					2				
	농 업	2	2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1	1							
	시설	16	14			2				
	공업·시설	3	1			2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해양수산·환경	1	1							
	녹지·시설	2	2							
	전산·통신	1	1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2	2							
	행정·시설	21	19			2				
	행정·공업	5	2			2			1	
	행정·농업	18	3				1	12	2	
	행정·별정	3	1	2						
	행정·보건	3			1			2		
	행정·사서	3				3				
	행정·세무	9	9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녹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	28	11				1	10	6	
	행정·환경	4	3						1	
	공업·환경	4	2			2				
	보건·환경	1	1							
	보·간·의기	7			7					
	보·환·공	2	1			1				
	시·환·공	2				2				
	행·농·시	3					1	2		
	행·농·해수	2	1					1		
	행·농·녹	2						2		
	행·보·간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시·해수	1						1		
	행·시·녹	1	1							
	행·환·시									
	행·농·시·별	1		1						
7 급	소 계	343	207	5	20	1	32	4	29	45
	행정	139	86	4	1		11	1	5	31
	세무	2	2							
	사회복지	18						1	8	9
	전산	1	1							
	사서	5					5			
	공업	9	2				7			
	농업	7	7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6	6							
	보건	8	2		5		1			
	의료기술									
	간호	6	1		4		1			
	환경	6	5				1			
	시설	40	35	1			4			
	통신	2	2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12	5				1	6		
	행정·농업	13	1			1	1	10		
	행정·별정	2	2							
	행정·사회	20	15						5	
	행정·세무	18	18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전산	3	3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공업	1	1							
	시설·디자인	1	1							
	공업·환경	3	2				1			
	보·간·의기	9			9					
	공·환·보	1					1			
8 급	소 계	255	137	3	30		24	2	17	42
	행정	94	48	2			7	1	2	34
	세무	4	4							
	사회복지	9	1						2	6
	전산	4	3	1						
	사서	3					3			
	공업	10	6				4			
	녹지	3	3							
	농업	1	1							
	해양수산	6	6							
	보건	17	5		12					
	의료기술	9			9					
	간호	3			3					
	환경	3	3							
	시설	34	26				7		1	
	통신	2	2							
	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11	6						5	
	행정·농업	10						1	7	2
	행정·사서	1	1							
	행정·사회	11	11							
	행정·세무	9	9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간호	3			3					
	공업·환경	2					2			
	간호·의기	2			2					
9 급	소 계	118	45		8		7	2	18	38
	행정	47	13				2	1	9	22
	세무	10	10							
	사회복지	25						1	8	16
	전산	1	1							
	사서	3					3			
	공업	3	3							
	농업	2	1						1	
	녹지	2	2							
	보건	9	1		7		1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13	12				1			
	통신	1	1							
	연구 직 계	3				2	1			
연구사	소 계	3				2	1			
	환경연구사	1				1				
	학예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1				1				
	지 도 직 계	32				32				
지도관	소 계	3				3				
	농·생지도관	3				3				
지도사	소 계	29				29				
	농 촌 지 도	22				22				
	생 활 지 도	3				3				
	농 · 생지도	4				4				
	기 능 직 계	222	128	7	6	3	61	1	14	2
6 급	소 계	7	6						1	
	전기	1	1							
	기계	1	1							
	조무	1	1							
	운전	1	1							
	사무	1	1							
	신박항해	2	1						1	
7 급	소 계	32	20		1		9		2	
	통신	1	1							
	전기	1					1			
	기계	6	2				4			
	신박기관	2	1						1	
	조무	5	2				3			
	운전	7	6		1					
	사무	7	6				1			
	신박항해	3	2						1	
8 급	소 계	44	28	1	2	1	11		1	
	통신	2	2							
	전기	3	1				2			

	기계	8	3				5			
	신박향해	3	2						1	
	신박기관	2	2							
	조무	2	1				1			
	전화상담	1	1							
	운전	14	10		1	1	2			
	열관리	3	1		1		1			
	위생	1	1							
	사무	5	4	1						
9 급	소 계	75	45	4	2	1	19		4	
	건축	1	1							
	통신	2	1	1						
	전기	6	3				3			
	기계	8	4	1			3			
	신박향해	1							1	
	조무	12	10				2			
	전화상담	2	2							
	농림	1				1				
	운전	10	5	1	2		2			
	열관리	4	2				2			
	화공	1					1			
	위생	3	1				2			
	사무	19	16	1			2			
	사육	2					2			
	사무·조무	3							3	
10 급	소 계	64	29	2	1	1	22	1	6	2
	전기	1					1			
	기계	3	1				2			
	조무	22	12			1	9			
	운전	2	1	1						
	열관리	2					2			
	위생	3					3			
	사무	22	15	1	1		5			
	사무·조무	9						1	6	2
	별 정 직 계	31	9		18	2	2			
6 급	소 계	3	3							
	홍보연구원	1	1							
	비서	1	1							
	문화재연구원	1	1							
6 ~ 7 급	소 계	18			18					
	보건진료원	18			18					
7 급	소 계	10	6			2	2			
	농기계교육교관	2				2				
	보건위생감시원	3	3							
	공기업회계원	1					1			
	수영강사	1					1			
	청소년수련지도사	3	3							
	공연기획홍보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 [별표]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 술훈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총	괄	1330	710	25	95	39	164	13	120	164
일반직계		1040	573	18	71	1	98	12	106	161
5급	행정	30	14				2	1	3	10
	행정·시설	10	5				1		1	3
6급	행정	74	51	3			7			13
	시설	15	13				2			
	행정·시설	23	21				2			
	행정·사회	29	12					1	10	6
	행정·환경	3	2							1
7급	소 계	347	207	5	22	1	34	4	29	45
	공업	11	2				9			
	보건	9	2		6		1			
	간호	7	1		5		1			
	시설	42	37	1			4			
	행정·시설	11	4					1	6	
8급	소 계	251	136	3	28		23	2	18	41
	행정	94	47	2			8	1	3	33
	전산	5	4	1						
	공업	8	6				2			
	보건	16	5		11					
	간호	2			2					
9급	소 계	117	45		8		7	2	19	36
	행정	47	14				2	1	10	20
	공업	2	2							
연구직 계		3				1	2			
연구	소 계	3				1	2			
	환경연구사	1					1			
기능직 계		223	127	7	6	3	62	1	14	3
6급	사무보조	1	1							
	선박	2	1						1	
7급	사무보조	7	6				1			
	선박	3	2						1	
8급	선박	3	2						1	
	교환	1	1							
	난방	3	1		1		1			
	사무보조	5	4	1						
9급	소 계	76	46	4	2	1	19		4	
	전기	7	4				3			
	선박	1							1	
	교환	2	2							
	난방	4	2				2			
	사무보조	22	16	1			2		3	
10급	소 계	64	27	2	1	1	23	1	6	3
	조무	21	10			1	10			
	난방	3					2			1
	사무보조	31	15	1	1		5	1	6	2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보건소	농업기 술훈센터	사업소	읍	면	동
총	괄	1330	712	25	95	40	161	13	118	166
일반직계		1041	574	18	71	1	97	12	104	164
5급	행정	29	13				2	1	3	10
	행정·시설	11	6				1		1	3
6급	행정	75	52	3			7			13
	시설	16	14				2			
	행정·시설	21	19				2			
	행정·사회	28	11					1	10	6
	행정·환경	4	3							1
7급	소 계	343	207	5	20	1	32	4	29	45
	공업	9	2				7			
	보건	8	2		5		1			
	간호	6	1		4		1			
	시설	40	35	1			4			
	행정·시설	12	5					1	6	
	시설·디자인	1	1							
8급	소 계	255	137	3	30		24	2	17	42
	행정	94	48	2			7	1	2	34
	전산	4	3	1						
	공업	10	6				4			
	보건	17	5		12					
	간호	3			3					
	행정·전산	1	1							
9급	소 계	118	45		8		7	2	18	38
	행정	47	13				2	1	9	22
	공업	3	3							
연구직 계		3				2	1			
연구	소 계	3				2	1			
	환경연구사	1				1				
기능직 계		222	128	7	6	3	61	1	14	2
6급	사무	1	1							
	선박함해	2	1						1	
7급	사무	7	6				1			
	선박함해	3	2						1	
8급	선박함해	3	2						1	
	전화상담	1	1							
	열관리	3	1		1		1			
	사무	5	4	1						
9급	소 계	75	45	4	2	1	19		4	
	전기	6	3				3			
	선박함해	1							1	
	전화상담	2	2							
	열관리	4	2				2			
	사무	19	16	1			2			
	사무·조무	3								3
10급	소 계	64	29	2	1	1	22	1	6	2
	조무	21	12			1	9			
	열관리	2					2			
	사무	22	15	1	1		5			
	사무·조무	9						1	6	2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인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훈령 제 256호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과등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직속부서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지원	자치행정	총무	기획	회계	세무	징수	민원	인재	환경경제	지역	투자	항만	농정	해양	산림	농수산
		계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총계	712	51	10	13	18	10	196	49	27	24	33	26	25	12	136	28	17	12	19	27	19	14
정무직계	1						1	1														
일반직계	574	42	7	12	14	9	152	32	24	15	31	23	16	11	115	23	15	11	17	19	17	13
3급	소계	1					1	1														
	행	1					1	1														
4급	소계	4					1	1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3													1	1						
5급	소계	32	4	1	1	1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정	13	2	1	1		7	1	1	1	1	1	1	1	2	1	1					
	해양수산	1													1					1		
	시설	3																				
	행정·사회	3																				
	행정·시설	6	1			1									1		1					
	행정·환경	1																				
	보·환·공업	1																				
	행정·농업	1													1				1			
	행정·전산·통	1	1			1																
	행정·농·해수	1													1							1
	행정·시·녹	1													1							1
6급	소계	148	11	2	3	3	35	7	7	3	5	5	5	3	34	7	5	3	5	5	5	4
	행정	52	6	2	2		23	6	7	3			4	3	13	6	5	2				
	세무	2					2				2											
	사회복지	2																				
	전산	1	1			1																
	공업																					
	농업	2													2				2			
	농지	2													2							2
	해양수산	2													2						2	
	보건	1																				
	시설	14	1			1																
	농업·시설	1																				
	보건·식품	1																				
	해양수산	1													1					1		
	농지·시설	2													2							2
	전산·통신	1	1			1																
	시설·전산	1																				
	농업·수의	2													2				2			
	보건·환경	1																				
	행정·시설	19	1		1											2			1		1	
행정·농업	3														3				1			
행정·세무	9						9				3	5	1									

기관별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교통국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직급별	직렬별																	
총 계		163	20	21	17	27	18	33	27	166	24	34	18	26	25	18	21	
정무직계																		
일반직계		129	19	18	14	19	17	27	15	136	23	21	17	25	17	15	18	
3급	소계																	
	행																	
4급	소계	1	1							1	1							
	행정·기술	1	1							1	1							
5급	소계	7	1	1	1	1	1	1	1	7	1	1	1	1	1	1	1	
	행정	1				1				1					1			
	해양수산																	
	시설									3		1		1			1	
	행정·사회	3	1	1	1													
	행정·시설	1					1			3	1		1			1		
	행정·환경	1							1									
	보·환·공업	1						1										
	행정·농업																	
	행정·산통																	
행정·해수																		
행정·시·녹																		
6급	소계	34	4	5	4	6	4	7	4	34	6	6	4	5	5	4	4	
	행정	6				4	1		1	4					3	1		
	세무																	
	사회복지	2	1	1														
	전산																	
	공업																	
	농업																	
	녹지																	
	해양수산																	
	보건	1							1									
	시설	1					1			12	3	2	2	3			2	
	농업·시설									1		1						
	보건·식품	1							1									
	해양수산·건설																	
	녹지·시설																	
	전산·통신																	
	시설·전산									1							1	
농업·수의																		
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2				1	1			14	3	2	2	2	1	3	1		
행정·농업																		
행정·세무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직속부서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지원	자치행정	총무	기획	회계	세무	징수	민원	인재	항만경제	지역	투자	항만	농정	해양	산림	농수산		
			계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국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6급	행정·해양수산	2														2						1		1	
	행정·녹지	1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전산	1	1			1																			
	행정·사회	11																							
	행정·환경	3																							
	행정·별정	1																							
	공업·환경	2																							
	공업·시설	1						1	1																
	보·환·공업	1																							
	행·보·환	1																							
	행·전산·통	1																							
	행·농·해수	1															1							1	
행·시·녹	1																								
7급	소 계	207	17	2	7	5	3	59	13	10	7	10	9	5	5	40	8	3	4	9	7	5	4		
	행 정	86	6	2	2		2	36	10	8	5	1	2	5	5	16	7	3	3			1	2		
	세 무	2						2					2												
	전 산	1	1			1																			
	사 서																								
	공 업	2						1	1							1				1					
	농 업	7														7				6			1		
	녹 지	4														4						4			
	수 의	1														1				1					
	해 양 수 산	6														5						4	1		
	보 건	2																							
	간 호	1																							
	환 경	5																							
	시 설	35	2		2											2			1			1			
	통 신	2	2				2																		
	식 품 위 생	1																							
	보 건·식 품	1																							
	행정·시설	5	2		1		1									1						1			
	행정·별정	2						2	1	1															
	행정·사회	15	1		1																				
	행정·세무	18	1		1			17		1	2	9	5												
	행정·농업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1			
	행정·전산	3	2			2		1	1																
	행정·환경	1																							
	행정·보건	1																							
	행정·공업	1															1	1							
	시설·디자인	1																							
	공업·환경	2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주민생활지원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6급	행정·해양수산																			
	행정·농지									1		1										
	행정·공업																					
	행정·전산																					
	행정·사회	11	3	4	4																	
	행정·환경	3						2	1													
	행정·별정	1				1																
	공업·환경	2						2														
	공업·시설																					
	보·환·공업	1							1													
	행·보·환	1							1													
	행·전산·통									1					1							
	행·농·해수																					
	행·시·농	1					1															
7급	소 계	47	7	7	6	7	4	11	5	44	9	6	5	7	5	6	6					
	행정	16	1	1	4	4	3	1	2	12	2	2	1	1	3	2	1					
	세무																					
	전산																					
	사서																					
	공업																					
	농업																					
	농지																					
	수의																					
	해양수산									1						1						
	보건	2						2														
	간호	1				1																
	환경	5						3	2													
	시설	3				2	1			28	6	4	4	5	1	3	5					
	통신																					
	식품위생	1						1														
	보건·식품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별정																					
	행정·사회	14	6	6	2																	
	행정·세무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정·전산																					
	행정·환경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																					
	시설·디자인									1	1											
	공업·환경	2						1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직속부서	공보	감사	정보통신	새만금지원	자치행정	총무	기획	회계	세무	징수	민원	인재	항만경제	지역	투자	항만	농정	해양	산림	농수산	
			계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담당관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과
8급	소계	137	7	1	1	3	2	34	8	6	3	10	3	3	1	27	5	6	3	1	5	4	3	
	행정	48	3	1	1		1	20	7	6	3		3	1	13	3	5	2	1				2	
	세무	4						4				4												
	사회복지	1																						
	전신	3	1			1																		
8급	공업	6														1	1							
	녹지	3														3						3		
	농업	1														1							1	
	해양수산	6														6		1		5				
	보건	5																						
	환경	3																						
	시설	26	1			1										1						1		
	통신	2	2			2																		
	세무·전신	1					1					1												
	행정·전신	1														1	1							
	행정·시설	6																						
	행정·사서	1					1	1																
행정·사회	11																							
행정·세무	9					8					5	3			1	1								
9급	소계	45	3	1		2	15	1		1	5	5	2	1	6	1			1	1	2	1		
	행정	13	1	1			5	1		1			2	1	3	1					1	1		
	세무	10					10				5	5												
	전신	1	1			1																		
	공업	3																						
	농업	1														1			1					
	녹지	2														2						2		
	보건	1																						
	환경	1																						
시설	12																							
통신	1	1			1																			
기능직계			128	8	2	1	4	1	42	15	3	9	2	3	9	1	21	5	2	1	2	8	2	1
6급	소계	6					3	1			2					1					1			
	전기	1					1	1																
	기계	1					1				1													
	조무	1																						
	운전	1					1				1													
	사무	1																						
선박항해	1														1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주민생활지원국계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지원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교통국계	도시계획과	건설과	공영사업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	토지정보과				
		8급	소계	32	6	4	3	3	6	5	5	37	6	6	6	7	5	2	5		
	행정	8	1			2	3		2	4		1			2		1				
	세무																				
	사회복지	1		1																	
	전산									2					1		1				
	공업									5		2	2			1					
8급	농지																				
	농업																				
	해양수산																				
	보건	5						4	1												
	환경	3						1	2												
	시설	3				1	2			21	6	2	3	5	1	1	3				
	통신																				
	세무·전산																				
	행정·전산																				
	행정·시설	1				1				5	1	1	2	1							
	행정·사서																				
	행정·사회	11	5	3	3																
	행정·세무																				
9급	소계	8	1		2	2	3			13		2	1	5	1	2	2				
	행정	4	1		1	1	1														
	세무																				
	전산																				
	공업	2			1	1				1					1						
	농업																				
	농지																				
	보건	1						1													
	환경	1						1													
	시설									12		2	1	5		2	2				
	통신																				
기능직계		27	1	3	3	4	1	3	12	30	1	13	1	1	8	3	3				
6급	소계	1							1	1					1						
	전기																				
	기계																				
	조무	1							1												
	운전																				
	사무									1					1						
	선박항해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직속부서 계	공보 담당관	감사 담당관	정보통신 담당관	새만금지원 담당관	자치행정국 계	총무 과	기획 예산 과	회계 과	세무 과	징수 과	민원 봉사 과	인재 양성 과	항만경제국 계	지역 경제 과	투자 지원 과	항만 물류 과	농정 과	해양 수산 과	산림 녹지 과	농수산물유통 과	
7급	소계	20						11	6	1	2			2		3						3		
	통신	1						1	1															
	기획	2						1	1															
	선박기관	1														1						1		
	조무	2						1	1															
	운전	6						4	1	1	1			1										
	사무	6						4	2		1			1										
선박항해	2														2							2		
8급	소계	28	1			1		5	1		2		1	1		7					1	4	2	
	통신	2																						
	전기	1																						
	기획	3																						
	선박항해	2														2						2		
선박기관	2														2						2			
8급	조무	1																						
	전화상담	1	1			1																		
	운전	10						3			2		1			2							2	
	열관리	1																						
	위생	1						1	1															
사무	4						1						1		1					1				
9급	소계	45	6	2		3	1	14	6	1	2	1	1	2	1	4	2	1						1
	건축	1						1	1															
	통신	1	1	1																				
	전기	3																						
	기획	4	1	1												1	1							
	조무	10	1				1	3	2				1											
	전화상담	2	2			2																		
	운전	5						1			1					1		1						
	열관리	2						2	2															
위생	1																							
사무	16	1			1		7	1	1	1	1		2	1	2	1							1	
10급	소계	29	1		1			9	1	1	1	1	1	4		6	3	1	1	1				
	운전	1																						
	기획	1																						
	조무	12						4	1				1	2		1	1							
	위생	15	1		1			5		1	1	1		2		5	2	1	1	1				
별정직계		9	1	1				1	1															
6급	소계	3	1	1				1	1															
	홍보연구관	1	1	1																				
	비서	1						1	1															
	문화재연구원	1																						
7급	소계	6																						
	보건위생 감시원	3																						
	청소년수련 지도사	3																						

[별표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2항 관련)

[의회사무국]

기관별		합 계	의 회 사 무 국																	
직급별	직렬별																			
계		25	25																	
일반직 계		18	18																	
4 급	소 계	1	1																	
	행정	1	1																	
5 급	소 계	3	3																	
	행정·별정	3	3																	
6 급	소 계	6	6																	
	행정	3	3																	
	행정·별정	2	2																	
	행·농·시·별	1	1																	
7 급	소 계	5	5																	
	행정	4	4																	
	시 설	1	1																	
8 급	소 계	3	3																	
	행정	2	2																	
	전 산	1	1																	
기능직 계		7	7																	
8 급	소 계	1	1																	
	사 무	1	1																	
9 급	소 계	4	4																	
	통 신	1	1																	
	기 계	1	1																	
	운 전 사 무	1	1																	
10 급	소 계	2	2																	
	운 전	1	1																	
	사 무	1	1																	

[별표 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3항 관련)

[직속 기관]

기관별		합 계	보건소 계	보건사업 과	건강관리 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 과	기술보급 과				
직급별	직렬별													
계		135	95	47	48			40	21	19				
일반 직 계		72	71	42	29			1		1				
4 급	소 계	1	1	1										
	기술	1	1	1										
5 급	소 계	3	3	1	2									
	의무	1	1		1									
	보건·의무 행·보·간	1	1	1										
6 급	소 계	9	9	4	5									
	행정·보건	1	1		1									
	보·간·의기 행·보·간	7	7	3	4									
7 급	소 계	21	20	11	9			1		1				
	행정	1	1	1										
	보건	5	5	2	3									
	간 호	4	4	1	3									
	행정·농업	1						1		1				
	행정·보건 보·간·의기	9	9	7	2									
8 급	소 계	30	30	19	11									
	보건	12	12	8	4									
	의료 기술	9	9	5	4									
	간 호	3	3	2	1									
	행정·보건	1	1	1										
	행정·간호 간호·의기	3	3	2	1									
9 급	소 계	8	8	6	2									
	보건	7	7	6	1									
	직무 보·간·의기	1	1		1									
연구 직 계		2						2		2				
연구사	소 계	2						2		2				
	환경연구사	1						1		1				
	농업연구사	1						1		1				
지도 직 계		32						32	18	14				
지도관	소 계	3						3	2	1				
	농·생 지도관	3						3	2	1				
지도사	소 계	29						29	16	13				
	농촌 지도	22						22	9	13				
지도사	생활 지도	3						3	3					
	농·생 지도	4						4	4					
기능 직 계		9	6	5	1			3	1	2				
7 급	소 계	1	1	1										
	운전	1	1	1										
8 급	소 계	3	2	2				1	1					
	운전	2	1	1				1	1					
	열관리	1	1	1										

[별표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수 도 과	하 수 과		시 설 관 리 사 업 소 계	체 육 시 설 관 리 과	시 립 도 서 관 관 리	문 화 회 관 관 리 과	철 새 생 태 관 리 과		기 타 사 업 소 계	차 량 등 특 사 업 소
계	161	76	51	25		72	26	22	13	11		13	13
일반직 계	97	42	24	18		44	13	18	7	6		11	11
4급 소 계	2	1	1			1	1						
	행정	1				1	1						
	행정·기술	1	1	1									
5급 소 계	7	2	1	1		4	1	1	1	1		1	1
	행정	2				2	1		1				
	행정·시설	1	1	1									
	행정·사서	1				1		1					
	행정·공업	1										1	1
	행·시·환	1	1		1								
	행·환·녹	1				1				1			
6급 소 계	25	12	7	5		11	3	4	2	2		2	2
	행정	7	2	2		5	1	1	2	1			
	시설	2	2	1	1								
	공업	2	1	1								1	1
	공업·시설	2	1	1		1	1						
	행정·공업	2				1	1					1	1
	행정·사서	3				3		3					
	행정·시설	2	2	1	1								
	공업·환경	2	2	1	1								
	보·환·공	1	1		1								
시·환·공	2	1		1	1				1				
7급 소 계	32	12	6	6		17	4	7	3	3		3	3
	행정	11	2	1	1	7	1	1	3	2		2	2
	사서	5				5		5					
	공업	7	3	2	1	3	2	1				1	1
	보건	1	1		1								
	간호	1				1	1						
	시설	4	4	2	2								
	환경	1				1				1			
	공업·환경	1	1		1								
공·환·보	1	1	1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수 도 과	하 수 과		시 설 관 리 사 업 소 계	체 육 시 설 관 리 과	시 립 도 서 관 관 리	문 화 회 관 관 리 과	철 새 생 태 관 리 과	기 타 사 업 소 계	차 량 등 록 사 업 소	
8급	소 계	24	14	8	6	7	3	3	1		3	3	
	행정	7	2	2		3	2		1		2	2	
	사서	3				3		3					
	공업	4	4	2	2								
	시설	7	6	4	2	1	1						
	행정·공업	1										1	1
	공업·환경	2	2		2								
9급	소 계	7	1	1		4	1	3			2	2	
	행정	2									2	2	
	사서	3				3		3					
	보건 시설	1 1	1	1		1	1						
연구직 계		1				1				1			
연구사	소 계	1				1				1			
	학예연구사	1				1				1			
기능직 계		61	33	26	7	26	12	4	6	4	2	2	
6급	소 계												
	기계												
7급	소 계	9	7	7		2			2				
	전기	1				1			1				
	기계	4	3	3		1			1				
	조무	3	3	3									
	사무	1	1	1									
8급	소 계	11	6	4	2	5	1	1	2	1			
	전기	2	1	1		1			1				
	기계	5	2	1	1	3	1	1	1				
	조무	1	1	1									
	운전	2	2	1	1								
	열관리	1				1				1			

기관별 직급 직렬별	합계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수 도 과	하 수 과		시설 관리 사업 소 계	체육 시설 관리 과	시립 도서관 관리	문화 회관 관리 과	철새 생태 관리 과	기 타 사 업 소 계	차 량 등 록 사 업 소
9급	소 계	19	9	6	3	10	5	1	1	3		
	전 기	3	1	1		2	1			1		
	기 계	3	3	2	1							
	조 두	2	2	1	1							
	운 전	2	2	1	1							
	열 관 리	2				2	2					
	화 공	1	1	1								
	위 생	2				2	2					
	사 두	2				2		1	1			
	사 육	2				2				2		
10급	소 계	22	11	9	2	9	6	2	1		2	2
	전 기	1				1		1				
	기 계	2	1	1		1	1					
	조 두	9	6	5	1	1	1				2	2
	운 전											
	열 관 리	2				2		1	1			
	위 생	3	1	1		2	2					
	사 두	5	3	2	1	2	2					
별정직 계	2	1	1		1	1						
7급	소 계	2	1	1		1	1					
	공업 회계원	1	1	1								
	수영강사	1				1	1					
	공안 기획 홍보원											

[별표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제5항 관련)

[읍면동]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동	해	월	
		계	계	면	산	현	피	수	야	정	산	포	도		서	신	명
계	297	13	13	118	11	11	11	11	14	11	11	11	15	12	166	8	9
일반직 계	280	12	12	104	10	10	10	10	13	10	10	10	11	164	8	9	
5급	소 계	27	1	1	10	1	1	1	1	1	1	1	1	16	1	1	
	행 정	14	1	1	3		1			1	1			10		1	
	행정·농업	3			3	1	1		1								
	행정·해양 수 산	1													1	1	
	행·농·보	1													1		
	행·농·녹	1			1							1					
	행·농·환	1			1				1								
	행정·시설	4			1									1	3		
	행·사·해수	1			1								1				
	행·보·환 공	1													1		
	6급	소 계	56	3	3	30	3	3	3	3	3	3	3	3	23	1	1
행 정		13													13	1	
행정·농업		15	1	1	12	2	2	1	1	1	2	1	1	1	2		
행정·보건		2			2				1				1				
행정·세무																	
행정·사회		17	1	1	10	1	1	1	1	1	1	1	1	1	6		
행정·공업		1													1		
행정·환경		1													1		
행·농·시		3	1	1	2			1	1								
행·농·해수		1			1									1			
행·농·녹		2			2							1	1				
행·사·해수		1			1								1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학	풍	앙	남	촌	암	암	정	송	운	운	운	룡	성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계		9	9	8	9	11	9	9	8	13	11	14	16	11	12
일반직 계		9	9	8	9	11	9	9	8	13	11	13	15	11	12
5급	소 계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1	1	1	1	1	1		1		1		1		
	행정·농업														
	행정·해양수산														
	행·농·보														1
	행·농·녹														
	행·농·환														
	행정·시설							1		1		1			
	행·시·해수														
	행·보·환·공													1	
6급	소 계	1	1	1	1	2	1	1	1	2	2	2	2	2	2
	행 정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농업								1						1
	행정·보건														
	행정·세무														
	행정·사회					1				1	1	1	1	1	
	행정·공업													1	
	행정·환경														1
	행·농·시														
	행·농·해수														
	행·농·녹														
행·시·해수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합계	읍	읍	면	읍	회	임	서	대	개	성	나	읍	읍	동	해	월	
			계	구	면	산	현	피	수	야	정	산	포	도	서				계
				읍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면	동	동	동
7급	소 계	78	4	4	29	3	2	3	3	5	3	3	2	1	4	45	3	3	
	행정	37	1	1	5	1			1	1	1				1	31	2	2	
	사회복지	18	1	1	8	1	1	1	1	1	1	1			1	9	1		
	행정·사회	5														5		1	
	행정·시설	7	1	1	6	1		1		1		1	1		1				
	행정·농업	11	1	1	10		1	1	1	2	1	1	1	1	1				
8급	소 계	61	2	2	17	1	2	1	2	2	1	1	2	3	2	42	1	2	
	행정	37	1	1	2								1	1		34	1	1	
	세 무																		
	사회복지	8			2				1				1			6		1	
	시 설	1			1									1					
	행정·시설	5			5		1		1	1	1				1				
행정·농업	10	1	1	7	1	1	1		1		1		1	1	2				
9급	소 계	58	2	2	18	2	2	2	1	2	2	2	2	2	1	38	2	2	
	행정	32	1	1	9	1	1	1	1	1	1	1	1	1		22	1	1	
	사회복지	25	1	1	8	1	1	1		1	1	1		1	1	16	1	1	
	농업 시설	1			1								1						
기능직 계		17	1	1	14	1	1	1	1	1	1	1	1	5	1	2			
6급	소 계	1			1									1					
	선박항해	1			1									1					
7급	소 계	2			2									2					
	선박항해	1			1									1					
	선박기관	1			1									1					
8급	소 계	1			1									1					
	선박항해	1			1									1					
9급	소 계	4			4	1						1		1	1				
	선박항해	1			1									1					
	사무·조무	3			3	1						1			1				
10급	소 계	9	1	1	6		1	1	1	1	1		1			2			
	열 관리																		
	사무·조무	9	1	1	6		1	1	1	1	1		1			2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	삼	신	중	흥	조	경	구	개	수	나	나	나	소	미
		학 동	풍 동	앙 동	남 동	촌 동	암 동	암 동	정 동	송 동	운 1 동	운 2 동	운 3 동	룡 동	성 동
7 급	소 계	3	3	2	3	3	3	2	1	3	3	3	4	3	3
	행 정	2	2	1	2	2	2	2	1	2	2	2	3	2	2
	사 회 복 지		1	1		1	1			1	1			1	1
	행 정·사 회	1			1							1	1		
	행 정·시 설														
	행 정·농 업														
8 급	소 계	2	2	2	2	2	2	3	2	4	4	3	5	3	3
	행 정	1	2	2	1	2	2	2	2	3	4	2	4	3	2
	세 무														
	사 회 복 지	1			1			1				1	1		
	시 설														
	행 정·시 설														
행 정·농 업									1					1	
9 급	소 계	2	2	2	2	3	2	2	3	3	1	4	3	2	3
	행 정	1	1	1	1	2	1	1	2	2		3	2	1	2
	사 회 복 지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농 업														
	시 설														
기 능 직 계												1	1		
6 급	소 계														
	선 박 항 해														
7 급	소 계														
	선 박 항 해 선 박 기 관														
8 급	소 계														
	선 박 항 해														
9 급	소 계														
	선 박 항 해														
	사 무·조 무														
10 급	소 계											1	1		
	열 관 리														
	사 무														
	사 무·조 무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 계	직 속 부서계	정보 통신 담당관	자치 행정 국계	총무과
총	계	710	42	19	197	50
일반직 계		573	34	15	153	33
5급	소 계	32	3	1	7	1
	행정	14	2		7	1
	행정·시설	5				
6급	소 계	148	8	3	36	8
	행정	51	4		24	7
	시설	13				
	행정·시설	21	1			
	행정·사외	12				
	행정·환경	2				
7급	소 계	207	14	5	59	13
	행정	86	4		36	10
	시설	37	2			
	행정·시설	4	1			
	시설·디자인					
8급	소 계	136	6	4	34	8
	행정	47	2		20	7
	전산	4	2	2		
	시설	26				
	사외복지	1				
9급	소 계	45	3	2	15	1
	행정	14	1		5	1
	공업	2				
기능직 계		127	7	4	42	15
6급	사무보조	1				
	선박	1				
7급	소 계	20			11	6
	사무보조	6			4	2
	선박	2				
8급	소 계	28	1	1	5	1
	선박	2				
	교환	1	1	1		
	난방	1				
	사무보조	4			1	
9급	소 계	46	5	3	14	6
	전기	4				
	교환	2	2	2		
	난방	2			2	2
	조무	10			3	2
	사무보조	16	1	1	7	1
10급	소 계	27	1		9	1
	조무	10			4	1
	사무보조	15	1		5	

개정안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 계	직 속 부서계	정보 통신 담당관	새만금 지원 담당관	자치 행정 국계	총무과
총	계	715	51	18	10	196	49
일반직 계		577	42	14	9	152	32
5급	소 계	32	4	1	1	7	1
	행정	13	2			7	1
	행정·시설	6	1		1		
6급	소 계	148	11	3	3	35	7
	행정	52	6		2	23	6
	시설	14	1		1		
	행정·시설	19	1				
	행정·사외	11					
	행정·환경	3					
7급	소 계	207	17	5	3	59	13
	행정	86	6		2	36	10
	시설	35	2				
	행정·시설	5	2		1		
	시설·디자인	1					
8급	소 계	138	7	3	2	34	8
	행정	48	3		1	20	7
	전산	3	1	1			
	시설	26	1		1		
	사외복지	2					
	해경·전산	1					
9급	소 계	47	3	2		15	1
	행정	13	1			5	1
	공업	3					
	사외복지	2					
기능직 계		128	8	4	1	42	15
6급	사무	1					
	선박왕해	1					
7급	소 계	20				11	6
	사무	6				4	2
	선박왕해	2					
8급	소 계	28	1	1		5	1
	선박왕해	2					
	전화상담	1	1	1			
	열관리	1					
	사무	4				1	
9급	소 계	45	6	3	1	14	6
	전기	3					
	전화상담	2	2	2			
	열관리	2				2	2
	조무	10	1		1	3	2
	사무	16	1	1		7	1
10급	소 계	29	1			9	1
	조무	12				4	1
	사무	15	1			5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 경제국계	지 역 경제과	투 자 지원과	항 만 물류과	주민 생활 지원국계	주민 생활 지원과
총 계		140	28	18	15	162	21
일반직 계		119	24	16	13	128	20
5 급	소 계	8	1	2	1	7	1
	행정	3	1	2		1	
6 급	소 계	35	7	5	4	34	5
	행정·시설	3			2	2	
	행정·사회					12	4
	행정·환경					2	
7 급	소 계	41	9	3	4	48	7
	행정	17	8	3	3	17	1
8 급	소 계	27	4	6	4	31	6
	시설	2			1	2	
	사회복지					1	
9 급	소 계	7	2			7	
	행정	4	2			4	
	공업					1	
기능직 계		21	4	2	2	27	1
6 급	선박	1					
7 급	사무보조					1	
	선박	2					
8 급	선박	2					
	난방					1	
	사무보조	1				1	
9 급	소 계	5	2	1	1	12	1
	전기					2	
	조무	1			1	3	
	사무보조	2	1			3	
10급	소 계	5	2	1	1	3	
	조무					2	
	사무보조	5	2	1	1	1	

개정안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항만 경제국계	지 역 경제과	투 자 지원과	항 만 물류과	주민 생활 지원국계	주민 생활 지원과
총 계		136	28	17	12	166	23
일반직 계		115	23	15	11	132	22
5 급	소 계	7	1	1	1	7	1
	행정	2	1	1		1	
6 급	소 계	34	7	5	3	34	4
	행정·시설	2			1	2	
	행정·사회					11	3
	행정·환경					3	
7 급	소 계	40	8	3	4	47	7
	행정	16	7	3	3	16	1
8 급	소 계	27	5	6	3	33	7
	시설	1				3	
	사회복지					2	1
	행정·전산	1	1				
9 급	소 계	6	1			10	2
	행정	3	1			4	
	공업					2	
	사회복지					2	2
기능직 계		21	5	2	1	27	1
6 급	선박항해	1					
7 급	사무					1	
	선박항해	2					
8 급	선박항해	2					
	열관리					1	
	사무	1				1	
9 급	소 계	4	2	1		11	1
	전기					1	
	조무					3	
	사무	2	1			3	
10급	소 계	6	3	1	1	4	
	조무	1	1			3	
	사무	5	2	1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 정 안 [별표1]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기관별 직렬별		여 성 복지과	문 화 체육과	환 경 위생과	건설 교통국 국계	도 시 계획과	건축과			기관별 직렬별		여 성 복지과	문 화 체육과	환 경 위생과	건설 교통국 국계	도 시 계획과	건축과
총 계		17	27	31	169	26	27			총 계		17	27	33	166	24	26
일반직 계		15	18	25	139	25	26			일반직 계		14	19	27	136	23	25
6 급	소 계	4	6	6	35	7	5			6 급	소 계	4	6	7	34	6	5
	행정·시설		1		15	4	2				행정·시설		1		14	3	2
	행정·환경			1							행정·환경			2			
7 급	소 계	6	8	11	45	9	8			7 급	소 계	6	7	11	44	9	7
	행정	4	5	1	12	2	1				행정	4	4	1	12	2	1
	시설		2		30	7	6				시설		2		28	6	5
	시설·디자인										시설·디자인				1	1	
8 급	소 계	3	2	5	38	7	7			8 급	소 계	3	3	5	37	6	7
	시설				22	7	5				시설		1		21	6	5
9 급	소 계	1	1	2	13		5			9 급	소 계		2	3	13		5
	행정	1	1								행정		1	1			
	공업				1						공업		1		1		
기능직 계		2	5	3	30	1	1			기능직 계		3	4	3	30	1	1
6 급	사무보조				1					6 급	사무				1		
7 급	사무보조				1					7 급	사무				1		
8 급	남방 사무보조	1			1					8 급	열관리 사무	1			1		
9 급	소 계	1	2	2	10					9 급	소 계	1	1	2	10		
	전기		1		2						전기				2		
	조무				3						조무				3		
	사무보조	1	1	1	3						사무	1	1	1	3		
10 급	소 계		2		9	1	1			10 급	소 계	1	2		9	1	1
	조무		1		4						조무	1	1		4		
	사무보조		1		3	1	1				사무		1		3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의 회 사무국			
기능직 계		7	7			
8 급	사무보조	1	1			
9 급	사무보조	1	1			
10급	사무보조	1	1			

개정안 [별표2]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의 회 사무국			
기능직 계		7	7			
8 급	사무	1	1			
9 급	사무	1	1			
10급	사무	1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보건소계	건강 관리과	농업기술 센터계	기 술 보급과		
계		134	96	48	39	18		
7 급	소 계	23	22	11	1	1		
	보건	6	6	4				
	간호	5	5	4				
8 급	소 계	28	28	9				
	보건	11	11	3				
	간호	2	2					
연구직 계		1			1	1		
연구사	소 계	1			1	1		
기능직 계		9	6	1	3	2		
8 급	남방	1	1					
10급	사무보조	1	1	1				

개정안 [별표3]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보건소계	건강 관리과	농업기술 센터계	기 술 보급과		
계		135	96	48	40	19		
7 급	소 계	21	20	9	1	1		
	보건	5	5	3				
	간호	4	4	3				
8 급	소 계	30	30	11				
	보건	12	12	4				
	간호	3	3	1				
연구직 계		2			2	2		
연구사	소 계	2			2	2		
	환경연구사	1			1	1		
기능직 계		9	6		3	2		
8 급	열관리	1	1					
10급	사무	1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4]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상하수도 사업소계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 사업소계	시설도사 관리과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상하수도 사업소계	수도과	하수과	시설관리 사업소계	시설도사 관리과
계	164	78	53	25	73	23	계	161	76	51	25	72	22
일반직 계	98	42	24	18	45	19	일반직 계	97	42	24	18	44	18
7급 소 계	34	14	7	7	17	7	7급 소 계	32	12	6	6	17	7
공업	9	5	3	2	3	1	공업	7	3	2	1	3	1
8급 소 계	23	12	7	5	8	4	8급 소 계	24	14	8	6	7	3
행정	8	2	2		4	1	행정	7	2	2		3	
공업	2	2	1	1			공업	4	4	2	2		
연구직 계	2	1	1		1		연구직 계	1				1	
연구사 소 계	2	1	1		1		연구사 소 계	1				1	
환경연구사	1	1	1				환경연구사						
기능직 계	62	34	27	7	26	4	기능직 계	61	33	26	7	26	4
7급 사무보조	1	1	1				7급 사무	1	1	1			
8급 난방	1				1		8급 열관리	1				1	
9급 난방	2						9급 열관리	2				2	
사무보조	2				2		사무	2				2	
10급 소 계	23	12	10	2	9	2	10급 소 계	22	11	9	2	9	2
조무	10	7	6	1	1		조무	9	6	5	1	1	
난방	2				2	1	열관리	2				2	1
사무보조	5	3	2	1	2		사무	5	3	2	1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개정안 [별표5] 군산시 지방공무원 정원표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읍계	오그읍	면계	운산면	회현면	인곡면	서수면	대야면	성산면	옥서면	동계	수송동	나운동	직급별 기관별 직렬별	합계	읍계	오그읍	면계	운산면	회현면	인곡면	서수면	대야면	성산면	옥서면	동계	수송동	나운동
계	297	13	13	120	11	11	11	11	15	11	13	164	11	14	계	294	13	13	115	10	11	11	10	14	10	12	166	13	14
일반직 계	279	12	12	106	10	10	10	10	14	10	12	161	11	12	일반직 계	277	12	12	101	9	10	10	9	13	9	11	164	13	13
8급 소 계	61	2	2	18	1	2	1	2	3	1	2	41	3	3	8급 소 계	60	2	2	16	1	2	1	1	2	1	2	42	4	3
행정	37	1	1	3				1				33	2	2	행정	37	1	1	2							34	3	2	
사회복지	8			2				1				6	1		사회복지	7			1							6		1	
9급 소 계	57	2	2	19	2	2	2	1	2	2	2	36	2	3	9급 소 계	56	2	2	16	1	2	2	1	2	1	1	38	3	4
행정	31	1	1	10	1	1	1	1	1	1	1	20	1	2	행정	32	1	1	9	1	1	1	1	1	1	22	2	3	
사회복지	25			8	1	1	1		1	1	1	16	1	1	사회복지	23	1	1	6	1	1		1	1	16	1	1		
기능직 계	18	1	1	14	1	1	1	1	1	1	1	3		2	기능직 계	17	1	1	14	1	1	1	1	1	1	1	2		1
6급 선박	1			1											6급 선박항해	1			1										
7급 선박	1			1											7급 선박항해	1			1										
8급 선박	1			1											8급 선박항해	1			1										
9급 선박	1			1											9급 선박항해	1			1										
사무보조	3			3	1					1	1				사무·조무	3			3	1					1	1			
10급 소 계	10	1	1	6		1	1	1	1			3	2		10급 소 계	9	1	1	6		1	1	1	1		2	1		
난방	1											1	1		난방														
사무보조	9	1	1	6	1	1	1	1				2	1		사무·조무	9	1	1	6	1	1	1	1		2	1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인
2009년 12월 29일

군산시 훈령 제 257호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군산시 과등에 두는 업무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6급 업무계장주사(이하 “계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6급 계장의 명칭 및 직급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본청

제3조(공보담당관실) ① 공보담당관실에 공보계장, 홍보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4조(감사담당관실) ① 감사담당관실에 감사계장, 조사감찰계장, 심사평가계장을 둔다.

② 감사계장·심사평가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조사감찰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5조(정보통신담당관실) 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정보기획계장, 정보개발계장, 정보통신계장을 둔다.

② 정보기획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정보개발계장은 지방전산주사로, 정보통신계장은 지방통신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한다.

제6조(새만금지원담당관실) ① 새만금지원담당관실에 새만금정책계장, 새만금지원계장, 새만금개발계장을 둔다.

② 새만금정책계장·새만금지원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새만금개발계장은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7조(총무과) ① 총무과에 총무계장, 시정계장, 인사계장, 공무원노조계장, 기록관리계장, 청사관리계장을 둔다.

② 총무계장·시정계장·인사계장·공무원노조계장·기록관리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청사관리계장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제8조(기획예산과) ① 기획예산과에 기획계장, 예산계장, 대외협력계장, 창의분권계장, 법무계장, 국제협력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9조(회계과) ① 회계과에 경리계장, 계약계장, 재산관리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10조(세무과) ① 세무과에 세정계장, 과표계장, 재산세계장, 도세계장, 세무조사계장을 둔다.

② 세정계장·재산세계장·도세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과표계장·세무조사계장은 각각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제11조(징수과) ① 징수과에 징세계장, 체납관리계장, 징수조사계장, 수납정리계장, 세외수입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제12조(민원봉사과) ① 민원봉사과에 민원관리계장, 주민여권계장, 가족관계등록계장, 생활민원계장, 산단민원계장을 둔다.

② 민원관리계장·주민여권계장·가족관계등록계장·생활민원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산단민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로 한다.

제13조(인재양성과) ① 인재양성과에 인재양성계장, 교육지원계장, 평생교육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14조(지역경제과) ① 지역경제과에 지역경제계장, 경제통계계장, 상정계장, 에너지계장, 취업노사계장, 전략산업계장을 둔다.

② 지역경제계장·경제통계계장·상정계장·취업노사계장·전략산업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에너지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제15조(투자지원과) ① 투자지원과에 투자유치계장, 기업지원계장, 산단관리계장, 산업인력양성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16조(항만물류과) ① 항만물류과에 항만정책계장, 물류지원계장, 항만시설계장을 둔다.

② 항만정책계장·물류지원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항만시설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17조(농정과) ① 농정과에 농업진흥계장, 친환경농업계장, 원예계장, 축산계장, 가축위생계장을 둔다.

② 농업진흥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친환경농업계장·원예계장은 각각 지방농업주사로, 축산계장·가축위생계장은

은 각각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로 한다.

제18조(해양수산과) ① 해양수산과에 수산행정계장, 해양계장, 증식계장, 어업지도계장, 도서개발계장을 둔다.

② 수산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해양계장은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증식계장·어업지도계장은 각각 지방해양수산주사로, 도서개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19조(산림녹지과) ① 산림녹지과에 녹지관리계장, 보호계장, 도심녹화계장, 공원계장, 산림계장을 둔다.

② 녹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로, 보호계장·도심녹화계장은 각각 지방녹지주사로, 공원계장·산림계장은 각각 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20조(농수산물유통과) ① 농수산물유통과에 농산물유통계장, 양정계장, 수산물유통계장, 시장개척계장을 둔다.

② 농산물유통계장·양정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수산물유통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시장개척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한다.

제21조(주민생활지원과) ①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기획계장, 서비스연계계장, 통합조사관리계장, 자원봉사계장을 둔다.

② 복지기획계장·서비스연계계장·자원봉사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하고, 통합조사관리계장은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한다.

제22조(복지지원과) ① 복지지원과에 기초생활계장, 자활복지계장, 재활복지계장, 경로복지계장, 복지시설계장을 둔다.

② 기초생활계장·재활복지계장·경로복지계장·복지시설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자활복지계장은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한다.

제23조(여성복지과) ① 여성복지과에 여성정책계장, 보육지원계장, 아동복지계장, 여성교육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한다.

제24조(문화체육과) ① 문화체육과에 문화정책계장, 예술진흥계장, 체육진흥계장, 청소년계장, 수련계장, 근대문화시설계장을 둔다.

② 문화정책계장·예술진흥계장·체육진흥계장·청소년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수련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별정6급상당으로, 근대문화시설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25조(관광진흥과) ① 관광진흥과에 관광진흥계장, 관광개발계장, 해양관광계장, 관광시설계장을 둔다.

② 관광진흥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관광개발계장은 지방시설주사로, 해양관광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관광시설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로 한다.

제26조(환경위생과) ① 환경위생과에 환경관리계장, 대기환경계장, 수질환경계장, 공중위생계장, 식품위생계장, 위생지도계장, 자전거정책계장을 둔다.

② 환경관리계장·자전거정책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대기환경계장·수질환경계장은 각각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공중위생계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위생지도계장은 지방보건주사로, 식품위생계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식품위생주사로 한다.

제27조(청소과) ① 청소과에 청소행정계장, 청소시설계장, 재활용계장, 청소지도계장을 둔다.

② 청소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재활용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청소시설계장은 지방환경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청소지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한다.

제28조(도시계획과) ① 도시계획과에 도시행정계장, 도시계획계장, 도시디자인계장, 도시정비계장, 도시관리계장, 원도심계장을 둔다.

② 도시행정계장·도시디자인계장·원도심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계획계장·도시정비계장·도시관리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29조(건설과) ① 건설과에 도로관리계장, 도로계획계장, 도로시설계장, 농업기반계장, 광고물계장, 도시조명계장을 둔다.

② 도로관리계장·광고물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로계획계장·도로시설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농업기반계장은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도시조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제30조(공영사업과) ① 공영사업과에 경영지원계장, 공영개발계장, 공공시설계장, 시설지원계장을 둔다.

② 경영지원계장·시설지원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공영개발계장·공공시설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31조(건축과) ① 건축과에 주택행정계장, 주택관리계장, 주거환경개선계장, 건축계장, 건축물관리계장을 둔다.

② 주택행정계장·건축물관리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주택관리계장·주거환경개선계장·건축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32조(교통행정과) ① 교통행정과에 교통기획계장, 교통관리계장, 교통지도계장, 교통시설계장, 지능형교통계장을 둔다.

② 교통기획계장·교통관리계장·교통지도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교통시설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지능형교통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로 한다.

제33조(재난관리과) ① 재난관리과에 민방위계장, 재난안전계장, 복구지원계장, 방재계장을 둔다.

② 민방위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재난안전계장·복구지원계장·방재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34조(토지정보과) ① 토지정보과에 토지관리계장, 지적계장, 지적정보계장, 지리정보계장을 둔다.

② 토지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지적계장·지적정보계장은 각각 지방시설주사로, 지리정보계장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로 한다.

제3장 의회사무국

제35조(의회사무국) ① 의회사무국에 의정계장, 의사계장, 의회홍보

계장, 운영위원회전문위원, 행정복지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을 둔다.

② 계장·전문위원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별정6급상당으로 한다.

제4장 직속기관(보건소·농업기술센터)

제36조(보건사업과) ① 보건사업과에 보건행정계장, 의약계장, 전염병관리계장, 통합보건지소계장을 둔다.

② 보건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로, 의약계장·전염병관리계장·통합보건지소계장은 각각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한다.

제37조(건강관리과) ① 건강관리과에 건강증진계장, 방문보건계장, 진료계장, 모자보건계장, 대야보건진료계장을 둔다.

② 건강증진계장·방문보건계장·진료계장·모자보건계장은 각각 지방보건주사·지방간호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로, 대야보건진료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한다.

제38조(농촌지원과) ① 농촌지원과에 지도기획계장, 소비자농업계장, 경영교육계장, 생활자원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생활지도사로 한다.

제39조(기술보급과) ① 기술보급과에 작물환경계장, 소득작목계장, 연구개발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농촌지도사로 한다.

제5장 사업소

제40조(수도과) ① 수도과에 관리계장, 요금계장, 수질관리계장, 수도계장, 급수계장, 시설계장, 우수유통제고계장을 둔다.

② 관리계장·요금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수질관리계장은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수도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급수계장은 지방시설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공업주사로, 우수유통제고계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41조(하수과) ① 하수과에 하수행정계장, 하수계획계장, 하수시설계장, 오수관리계장, 하수처리계장을 둔다.

② 하수행정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하수계획계장은 지방시설주사로, 하수시설계장은 지방시설주사·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오수관리계장은 지방환경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로, 하수처리계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한다.

제42조(체육시설관리과) ① 체육시설관리과에 운영계장, 시설계장, 국민체육센터계장을 둔다.

② 운영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국민체육센터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제43조(시립도서관관리과) ① 시립도서관관리과에 관리계장, 도서진흥계장, 자료운영계장, 분관운영계장을 둔다.

②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도서진흥계장·자료운영계장·분관운영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한다.

제44조(문화회관관리과) ① 문화회관관리과에 관리계장, 문학관관리계장을 둔다.

② 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한다.

제45조(철새생태관리과) ① 철새생태관리과에 관리계장, 시설계장을 둔다.

②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시설계장은 지방환경주사·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한다.

제46조(차량등록사업소) ①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리계장, 등록계장을 둔다.

② 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등록계장은 지방공업주사로 한다.

제6장 읍·면·동

제47조(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 ① 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임피면, 서수면,

대야면, 개정면, 성산면, 나포면, 옥도면, 옥서면에 주민생활계장, 민원계장, 산업계장을 둔다.

② 각 읍·면의 주민생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옥구읍 민원계장, 옥산면 민원계장·산업계장, 회현면 민원계장·산업계장, 임피면·서수면·대야면 민원계장, 개정면 민원계장·산업계장, 성산면·나포면·옥도면·옥서면 민원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한다.

③ 옥구읍·임피면·대야면 산업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서수면 산업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성산면·나포면 산업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로, 옥도면 산업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시설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옥서면 산업계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로 한다.

제48조(해신동 등) ① 해신동, 월명동, 삼학동, 신평동, 중앙동, 흥남동, 경암동, 구암동, 개정동에 각각 주민생활계장을 둔다.

② 각 주민생활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로 하되, 개정동 주민생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한다.

제49조(조촌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 ① 조촌동, 수송동, 나운1동, 나운2동, 나운3동, 소룡동, 미성동에 각각 주민생활계장 및 행정지원계장을 둔다.

② 각 주민생활계장은 각각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로, 행정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하되, 소룡동 행정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로, 미성동 주민생활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행정지원계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군산시 지방행정시책오보에 관한 해명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담당계장”으로 한다.

② 「군산시 개인정보 보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다.

제10조제2항 중 “각 담당”을 “각 계장”으로, “업무관련 담당”을 “업무관련 계장”으로 한다.

- ③ 「군산시행정전산망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제3호서식·제4호서식·제9호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④ 「군산시민원시간외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⑤ 「군산시청매점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5조 중 “총무담당주사”를 “총무계장”으로 한다.

- ⑥ 「군산시친절·불친절공무원운영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사업무담당”을 “인사계장”으로 한다.

- ⑦ 「군산시 품질행정 매뉴얼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총무담당”을 “총무계장”으로 한다.

- ⑧ 「군산시 품질행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9조제2항 중 “총무담당”을 “총무계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제39조 중 “민원관리담당”을 “민원관리계장”으로,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제40조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제57조 중 “담당”을 “계장”으로, 제112조제1항 중 “차량등록담당”을 “차량등록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총무담당”을 “총무계장”으로, 별지 제10호 서식 중 “주무담당”을 “주무계장”으로, 별지 제13호 서식·제15호 서식·제25호 서식 중 “총무담당”을 “총무계장”으로, 별지 제26호 서식·제35호 서식 중 “총무담당”을 “총무계장”으로,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⑨ 「군산시행정실명제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별표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⑩ 「군산시회의및출장통제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읍·면주민생활담당주사”를 “읍·면주민생활계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시정담당주사”를 “시정계장”으로, “읍·면주민생활담당

주사”를 “읍·면주민생활계장”으로, “주관담당주사”를 “주관계장”으로, “담당주사”를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항·제3항 중 “시정담당주사”를 “시정계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시정담당주사”를 “시정계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중 “시정담당주사”를 “시정계장”으로, “시정담당”을 “시정계장”으로 한다.

제15조 중 “관계담당주사”를 “관계계장”으로, “주관담당주사”를 “주관계장”으로, “읍·면주민생활담당주사”를 “읍·면주민생활계장”으로 한다.

- ⑪ 「군산시 통·이장신분증 발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⑫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인사담당”을 “인사계장”으로 한다.

- ⑬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인사담당”을 “인사계장”으로 한다.

별표제4호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⑭ 「군산시 발간실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록관리담당주사”를 “기록관리계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록관리담당”을 “기록관리계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문서통담당주사”를 “기록관리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문서담당”을 “기록관리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⑮ 「군산시 행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기록관리담당”을 “기록관리계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계장”으로, 같은 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계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담당주사”를 “계장”으로, “기록관리담당주사”를 “기록관리계장”으로 한다.

- ⑯ 「군산시 방화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청사관리담당주사”를 “청사관리계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무담당주사”를 “주무계장”으로 한다.

- ⑰ 「군산시 기획조정 통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관련담당주사”를 “관련계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제통계담당주사”를 “경제통계계장”으로 한다.

제4조 중 “법무담당주사”를 “법무계장”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별표1 중 “기획담당”을 “기획계장”으로, “예산담당”을 “예산계장”으로 한다.

별표2 중 “법무담당”을 “법무계장”으로 한다.

- ⑱ 「군산시 행정혁신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4항 중 “창의분권담당”을 “창의분권계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각 부서 담당”을 “각 부서 계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창의분권담당”을 “창의분권계장”으로 한다.

- ⑲ 「군산시차량집중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계약담당”을 “계약계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중 “담당주사”를 “계장”으로 한다.

- ⑳ 「군산시 도서관발전시설의 관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에너지담당”을 “에너지계장”으로, “산업담당”을 “산업계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담당”을 “산업계장”으로 한다.

- ㉑ 「군산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인정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 중 “장애인복지담당”을 “장애인복지계장”으로 한다.

- ㉒ 「군산시 여성복지과 가사도우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제6호서식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㉓ 「군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체육진흥담당주사”를 “체육진흥계장”으로,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계”로 한다.

- ㉔ 「군산시시립예술단진흥기금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금업무담당”을 “기금업무계장”으로 한다.

- ㉕ 「군산시폐기물매립장주민감시요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②6 「군산시 방위지원본부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담당주사”를 “기획계장”으로, “기록관리담당주사”를 “기록관리계장”으로, “총무담당주사”를 “총무계장”으로, “민방위담당주사”를 “민방위계장”으로, “교통관리담당주사”를 “교통관리계장”으로, “도로관리담당주사”를 “도로관리계장”으로, “산단관리담당주사”를 “산단관리계장”으로, “기업진흥담당주사”를 “기업진흥계장”으로, “에너지담당주사”를 “에너지계장”으로, “보건행정담당주사”를 “보건행정계장”으로, “사회복지담당주사”를 “사회복지계장”으로, “양정담당주사”를 “양정계장”으로, “경로 복지담당주사”를 “경로복지계장”으로, “공보담당주사”를 “공보 계장”으로, “예산담당주사”를 “예산계장”으로 한다.
- ②7 「군산시 민방위 경보 단말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조 중 “민방위담당”을 “민방위계장”으로, “민방위 담당주사”를 “민방위계장”으로 한다.
- ②8 「군산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제2-2호서식·제3호서식 결재란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
- ②9 「군산시 읍·면·동 행정실적종합평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7조제3항 중 “시정담당주사”를 “시정계장”으로 한다.
- ③0 「군산시 읍·면·동 방위지원본부 운용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읍·면총무담당주사”를 “읍·면총무계장”으로, “민원담당주사”를 “민원계장”으로, “산업담당주사”를 “산업계장”으로 한다.
- ③1 「군산시 관공선관리및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결재란 중 “담당주사”를 “계장”으로, “총무담당주사”를 “총무계장”으로 한다.